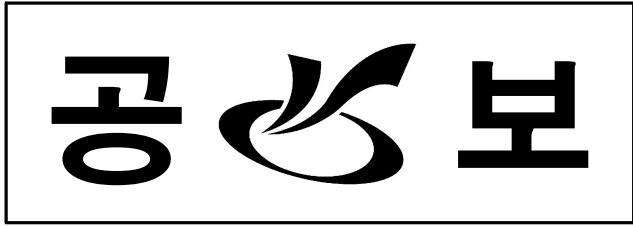


# 인천광역시서구

공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.



선	기관의 장
람	

제 638호  
2008년 5월 19일 월요일

## 차 례

### 고 시

- 인천광역시서구고시 제2008-16호 주택재건축사업 준공인가 정정고시 ..... 2
- 인천광역시서구고시 제2008-17호 인천도시관리계획(검암1·2구역 제1종지구단위계획)결정(변경) 고시 ..... 4
- 인천광역시서구고시 제2008-18호 인천도시계획시설(도로:백석지구 소3-1호선일원)실시계획(변경)인가 고시 ..... 83

### 공 고

- 인천광역시서구공고 제2008-417호 도로의 지정공고 ..... 88
- 인천광역시서구공고 제2008-426호 폐기물처리업 등 허가 및 승인·신고제한 공고(3차 변경) ..... 89
- 인천광역시서구공고 제2008-427호 공시송달공고 ..... 93
- 인천광역시서구공고 제2008-429호 인천광역시 서구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(안) 입법예고 ..... 94

회 람							
--------	--	--	--	--	--	--	--

발행 : 인천광역시서구

편집 : 기획홍보실

**고 시**

**인천광역시서구고시 제2008 - 16호**

**주택재건축사업 준공인가 정정고시**

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2조의 규정에 의거 주택재건축사업준공인가한 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정정 고시합니다.

2008년 5월 8일

**인 천 광 역 시 서 구 청 장**

- 1. 정비사업의 종류 및 명칭 : 석남동 석남주공1단지 재건축아파트 건립공사
- 2. 정비사업의 시행구역의 위치 : 인천광역시 서구 석남동 532번지 외2필지
- 3. 사업시행자 : 석남주공1단지아파트주택재건축조합 조합장 방일만(석남동 532)
- 4. 준공인가의 내역

- 가. 대지면적 : 32,898.30㎡
- 나. 연 면 적 : 105,854.36㎡
- 다. 주 용 도 : 공동주택(아파트)
- 라. 주요구조 : 철근콘크리트구조
- 마. 세 대 수 : 769세대
- 바. 층 수 : 지하2층 / 지상 15-28층 / 13개동

5. 준공인가일 : 2007년 11월 30일

6. 준공인가 정정고시 요지

**※ 사업시행자 【석남주공1단지 재건축조합】 동의확인서 제출사항**


: 재건축사업과 관련하여 사업시행자가 교통영향평가 이행에 따라 설치한 시설물은 법정하차 기간 내에서 입주자가 관리하며, 교통영향평가에 의거 사업시행자 소유부지 내 설치된 공공도로상 후퇴구간에 대해서는 준공인가 후 별도 소유자의 동의를 구하지 않고 시설물관리청이나 관리청이 위임허가한 기관에서 시설물유지관리나 신규시설물 설치도 가능함.


## 동 의 확 인 서

1. 인천 석남주공1단지 재건축조합 소유의 토지가 사업승인 교통영향평가 조건에 의거 도로부분으로 사용되므로, 이에 설치되는 시설물에 대하여 시설물별 법정하자 기간 내 시설물의 훼손 관리를 입주자가 관리하며, 법정 하자기간 완료 후 담당 관청과 협의하여 시설물 관리를 이관한다.

2. 인천 석남주공1단지 재건축 조합에서 사업계획 승인 시 교통영향평가에 의거 소유부지내 설치된 공공도로 후퇴(센백)구간에 대하여는 준공 후에도 별도 소유자의 동의를 구하지 않고, 시설물 관리청이나 관리청이 위임 허가한 기관에서 시설물 유지나 신규 시설물 설치도 가능함을 무상 동의합니다.

2007년 11월 일

주식회사 금호산업  
대표이사 

인천 석남 주공1단지 재건축정비조합  
조합장 방일만 

## 인천광역시서구청고시 제2008 - 17호

## 인천도시관리계획(검암1·2구역 제1종지구단위계획) 결정(변경) 고시

인천도시관리계획(검암1·2구역 제1종지구단위계획)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30조 및 동법시행령 제25조의 규정에 의거 도시관리계획 결정(변경)하고 고시 합니다.

관계도서는 서구청 도시개발과(032-560-4754)에 비치하고 토지소유자등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.

2008년 5월 14일

### 인 천 광 역 시 서 구 청 장

#### I. 검암1구역 지구단위계획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(변경) 조서

##### 1. 검암1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(변경) 조서

가.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(변경) 조서 :변경없음

도면표시 번호	구역명	위 치	면 적 (㎡)			비고
			기 정	변 경	변경후	
-	검암1구역	서구 검암동 635번지	663,302.9	-	663,302.9	

나. 용도지역·지구의 결정(변경) 조서 : 변경없음

구 분	면 적 (㎡)			구성비(%)	비고
	기 정	변 경	변경후		
계	663,302.9	-	663,302.9	100.0	
제1종 일반주거지역	396,324.1	-	396,324.1	69.8	
제2종 일반주거지역	151,989.1	-	151,989.1	22.9	
제3종 일반주거지역	114,989.7	-	114,989.7	17.3	

다. 도시기반시설 배치와 규모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 조서

1) 도 로 : 변경없음

■ 도로 총괄표

구 분	합 계		1 류		2 류		3 류		
	연장(m)	노선수	연장(m)	노선수	연장(m)	노선수	연장(m)	노선수	
합 계	15,974	88	1,992	11	10,416	60	3,566	17	
일 반 도	대로	-	-	-	-	-	-	-	
	중로	3,113	7	-	-	2,109	3	1,004	4
	소로	12,407	68	1,942	9	8,098	53	2,367	6
보행자 전용도로	중로	49	2	-	-	-	-	49	2
	소로	405	11	50	2	209	4	146	5

■ 도로 결정(변경) 조서

구분	규 모				기능	연 장 (m)	기 점	종 점	사 용 태	주 요 경과지	최초 결정일	비고
	등급	류별	번호	폭원 (m)								
기정	중로	2	169	18~25	보조 간선	1,507	검암동산19 남측지구계	대로1-19 (검암동71-3)	일반 도로		인고93-130 ('93.9.28)	
기정	중로	2	170	15~16	국지 도로	82	중로2-169	중로3-141	일반 도로		인고2000-113 (2000.6.30)	
기정	중로	2	184	18~25	보조 간선	520 (2,420)	검암동5-1 (서측지구계)	대로1-19	일반 도로		인고93-130 ('93.9.28)	
기정	중로	3	72	12	집산 도로	194	소로3-4	소로1-3	일반 도로		인고93-130 ('93.9.28)	
기정	중로	3	138	12	국지 도로	323	검암동 244-3	중로 2-169	일반 도로	-	인고93-130 ('93.9.28)	
기정	중로	3	139	12	국지 도로	325	중로 2-169	중로 3-140	일반 도로	-	인고93-130 ('93.9.28)	
기정	중로	3	140	12	특수 도로	24	대로 1-19	중로 3-139	보행자 도로	-	인고93-130 ('93.9.28)	
기정	중로	3	141	12	국지 도로	162	중로 2-170	중로 3-142	일반 도로	-	인고2000-113 (2000.6.30)	
기정	중로	3	142	12	특수 도로	25	대로 1-19	중로 3-141	보행자 도로		인고93-130 ('93.9.28)	
기정	소로	1	1	10~16	국지 도로	1,061	중로 2-169	중로 2-169	일반 도로	-	인고93-130 ('93.9.28)	
기정	소로	1	2	10	국지 도로	175	중로 3-72	소로 2-10	일반 도로	-	인고93-130 ('93.9.28)	
기정	소로	1	3	10	국지 도로	282	소로 1-20	소로 2-111	일반 도로	-	인고93-130 ('93.9.28)	
기정	소로	1	4	10	특수 도로	25	대로 1-19	소로 2-44	보행자 도로	-	인고93-130 ('93.9.28)	
기정	소로	1	5	10~12	국지 도로	254	중로 2-184	중로 3-139	일반 도로	-	인고93-130 ('93.9.28)	
기정	소로	1	11	10	국지 도로	32	중로 2-169	소로 2-5	일반 도로	-	인고93-130 ('93.9.28)	
기정	소로	1	13	10	국지 도로	34	중로 2-169	소로 2-16	일반 도로	-	인고93-130 ('93.9.28)	
기정	소로	1	16	10	국지 도로	32	중로 2-169	소로 2-10	일반 도로	-	인고93-130 ('93.9.28)	
기정	소로	1	17	8	국지 도로	36	중로 2-184	소로 2-64	일반 도로	-	인고93-130 ('93.9.28)	
기정	소로	1	18	10	국지 도로	36	중로 2-184	소로 2-65	일반 도로	-	인고93-130 ('93.9.28)	
기정	소로	1	20	10	특수 도로	25	대로 1-19	소로 1-3	보행자 도로	-	인고93-130 ('93.9.28)	

구분	규 모				기능	연 장 (m)	기 점	종 점	사 용 형 태	주 요 경과지	최 초 결 정 일	비 고
	구분	류 별	번 호	폭 원 (m)								
기정	소로	2	1	8	국지 도로	158	대로 1-19	소로 3-4	일반 도로	-	인고93-130 ('93.9.28)	
기정	소로	2	5	8	국지 도로	209	중로 3-141	중로 2-170	일반 도로	-	인고93-130 ('93.9.28)	
기정	소로	2	10	8	국지 도로	33	소로 1-2	소로 1-16	일반 도로	-	인고93-130 ('93.9.28)	
기정	소로	2	12	8	국지 도로	133	소로 1-2	소로 3-4	일반 도로	-	인고93-130 ('93.9.28)	
기정	소로	2	13	8	국지 도로	107	소로 1-2	소로 3-4	일반 도로	-	인고93-130 ('93.9.28)	
기정	소로	2	14	8	국지 도로	216	소로 2-10	소로 3-4	일반 도로	-	인고93-130 ('93.9.28)	
기정	소로	2	16	8	국지 도로	319	소로 1-1	소로 2-111	일반 도로	-	인고93-130 ('93.9.28)	
기정	소로	2	17	8	국지 도로	158	소로 2-26	소로 2-23	일반 도로	-	인고2000-113 (2000.6.30)	
기정	소로	2	18	8	국지 도로	113	소로 1-3	소로 2-16	일반 도로	-	인고93-130 ('93.9.28)	
기정	소로	2	19	8	국지 도로	130	소로 1-3	소로 2-16	일반 도로	-	인고93-130 ('93.9.28)	
기정	소로	2	20	8	국지 도로	62	소로 2-18	소로 2-19	일반 도로	-	인고93-130 ('93.9.28)	
기정	소로	2	21	8	국지 도로	166	중로 2-169	소로 1-3	일반 도로	-	인고93-130 ('93.9.28)	
기정	소로	2	22	8	국지 도로	120	소로 1-3	소로 2-21	일반 도로	-	인고93-130 ('93.9.28)	
기정	소로	2	23	8	국지 도로	220	중로 3-138	소로 1-3	일반 도로	-	인고93-130 ('93.9.28)	
기정	소로	2	24	8	국지 도로	62	중로 3-138	검암4공원	일반 도로	-	인고93-130 ('93.9.28)	
기정	소로	2	25	8	국지 도로	130	소로 2-23	소로 2-24	일반 도로	-	인고93-130 ('93.9.28)	
기정	소로	2	26	8	국지 도로	32	소로 1-1	소로 2-17	일반 도로	-	인고93-130 ('93.9.28)	
기정	소로	2	27	8	국지 도로	244	소로 1-3	소로 2-111	일반 도로	-	인고93-130 ('93.9.28)	
기정	소로	2	28	8	국지 도로	93	소로 2-111	소로 2-27	일반 도로	-	인고93-130 ('93.9.28)	
기정	소로	2	29	8	국지 도로	132	소로 2-28	소로 2-27	일반 도로	-	인고93-130 ('93.9.28)	
기정	소로	2	30	8	국지 도로	34	소로 1-1	소로 2-27	일반 도로	-	인고93-130 ('93.9.28)	
기정	소로	2	31	8	특수 도로	34	중로 2-169	소로 2-111	보행자 도로	-	인고93-130 ('93.9.28)	

구분	규 모				기능	연 장 (m)	기 점	종 점	사 용 형 태	주 요 경과지	최초 결정일	비고
	등급	류별	번호	폭원 (m)								
기정	소로	2	32	8	국지 도로	109	중로 2-169	소로 3-4	일반 도로	-	인고93-130 (93.9.28)	
기정	소로	2	36	8	특수 도로	109	중로 2-169	소로 3-4	보행자 도로	-	인고93-130 (93.9.28)	
기정	소로	2	37	8	국지 도로	79	소로 1-1	소로 2-111	일반 도로	-	인고93-130 (93.9.28)	
기정	소로	2	38	8	특수 도로	34	중로 2-169	소로 2-111	보행자 도로	-	인고93-130 (93.9.28)	
기정	소로	2	39	8	국지 도로	98	소로 2-37	소로 2-109	일반 도로	-	인고93-130 (93.9.28)	
기정	소로	2	40	8	국지 도로	231	중로 3-138	소로 2-43	일반 도로	-	인고93-130 (93.9.28)	
기정	소로	2	41	8	국지 도로	191	중로 3-138	소로 2-40	일반 도로	-	인고93-130 (93.9.28)	
기정	소로	2	42	8	특수 도로	32	소로 1-1	소로 2-40	보행자 도로	-	인고93-130 (93.9.28)	
기정	소로	2	43	8	국지 도로	256	중로 3-139	소로 1-1	일반 도로	-	인고93-130 (93.9.28)	
기정	소로	2	44	8	국지 도로	615	중로 3-139	소로 2-45	일반 도로	-	인고93-130 (93.9.28)	
기정	소로	2	45	8	국지 도로	214	소로 1-1	소로 2-44	일반 도로	-	인고93-130 (93.9.28)	
기정	소로	2	46	8	국지 도로	225	중로 3-139	소로 2-44	일반 도로	-	인고93-130 (93.9.28)	
기정	소로	2	47	8	국지 도로	121	소로 2-45	소로 2-46	일반 도로	-	인고93-130 (93.9.28)	
기정	소로	2	48	8	국지 도로	130	소로 2-45	소로 2-46	일반 도로	-	인고93-130 (93.9.28)	
기정	소로	2	49	8	국지 도로	110	소로 1-5	소로 2-46	일반 도로	-	인고93-130 (93.9.28)	
기정	소로	2	50	8	국지 도로	32	중로 3-139	소로 2-43	일반 도로	-	인고93-130 (93.9.28)	
기정	소로	2	51	8	국지 도로	76	중로 2-169	소로 1-1	일반 도로	-	인고93-130 (93.9.28)	
기정	소로	2	52	8	국지 도로	115	중로 2-169	소로 3-4	일반 도로	-	인고93-130 (93.9.28)	
기정	소로	2	53	8	국지 도로	259	중로 2-184	소로 2-52	일반 도로	-	인고93-130 (93.9.28)	
기정	소로	2	54	8	국지 도로	231	중로 2-184	소로 2-53	일반 도로	-	인고93-130 (93.9.28)	

구분	규 모				기 능	연 장 (m)	기 점	종 점	사 용 형 태	주 요 경과지	최초 결정일	비고
	등급	류별	번호	폭원 (m)								
기정	소로	2	55	8	국지 도로	110	중로 2-169	소로 3-4	일반 도로	-	인고93-130 (`93.9.28)	
기정	소로	2	56	8	국지 도로	206	중로 2-184	소로 2-60	일반 도로	-	인고93-130 (`93.9.28)	
기정	소로	2	57	8	국지 도로	109	소로 2-56	소로 3-5	일반 도로	-	인고93-130 (`93.9.28)	
기정	소로	2	58	8	국지 도로	113	소로 2-56	소로 3-5	일반 도로	-	인고93-130 (`93.9.28)	
기정	소로	2	59	8	국지 도로	204	중로 2-169	연희동 73-1 남측지구계	일반 도로	-	인고93-130 (`93.9.28)	
기정	소로	2	60	8	국지 도로	134	소로 2-59	소로 3-5	일반 도로	-	인고93-130 (`93.9.28)	
기정	소로	2	61	8	국지 도로	79	소로 2-59	소로 3-5	일반 도로	-	인고93-130 (`93.9.28)	
기정	소로	2	62	8	국지 도로	107	소로 1-1	소로 3-6	일반 도로	-	인고93-130 (`93.9.28)	
기정	소로	2	63	8	국지 도로	106	소로 2-65	소로 2-62	일반 도로	-	인고93-130 (`93.9.28)	
기정	소로	2	64	8	국지 도로	26	소로 1-17	소로 3-6	일반 도로	-	인고93-130 (`93.9.28)	
기정	소로	2	65	8	국지 도로	242	소로 2-62	소로 2-64	일반 도로	-	인고93-130 (`93.9.28)	
기정	소로	2	66	8	국지 도로	92	소로 2-65	소로 3-6	일반 도로	-	인고93-130 (`93.9.28)	
기정	소로	2	67	8	국지 도로	30	중로 2-169	소로 2-56	일반 도로	-	인고93-130 (`93.9.28)	
기정	소로	2	109	8	국지 도로	68	소로 1-1	소로 2-111	일반 도로	-	인고93-130 (`93.9.28)	
기정	소로	2	111	8	국지 도로	509	소로 1-3	소로 1-1	일반 도로	-	인고2000-113 (2000.6.30)	
기정	소로	3	3	6	국지 도로	110	중로 2-169	소로 3-4	일반 도로	-	인고93-130 (`93.9.28)	
기정	소로	3	4	6	국지 도로	1,379	중로 2-184	소로 2-1	일반 도로	-	인고93-130 (`93.9.28)	

구분	규 모				기 능	연 장 (m)	기 점	종 점	사 용 형 태	주 요 경과지	최초 결정일	비고
	등급	류별	번호	폭원 (m)								
기정	소로	3	5	6	국지 도로	305	중로 2-184	소로 2-59	일반 도로	-	인고93-130 ('93.9.28)	
기정	소로	3	6	6	국지 도로	392	대로 1-19	중로 2-1	일반 도로	-	인고93-130 ('93.9.28)	
기정	소로	3	7	6	특수 도로	26	소로 2-21	3호어린이공원	보행자 도로	-	인고93-130 ('93.9.28)	
기정	소로	3	8	6	특수 도로	25	대로 1-19	소로 2-22	보행자 도로	-	인고93-130 ('93.9.28)	
기정	소로	3	12	6	특수 도로	25	대로 1-19	소로 2-23	보행자 도로	-	인고93-130 ('93.9.28)	
기정	소로	3	14	6	특수 도로	36	중로 3-139	소로 2-111	보행자 도로	-	인고93-130 ('93.9.28)	
기정	소로	3	15	6	특수 도로	34	중로 2-169	소로 2-46	보행자 도로	-	인고93-130 ('93.9.28)	
기정	소로	3	16	6	국지 도로	86	소로 2-58	소로 2-60	일반 도로	-	인고93-130 ('93.9.28)	
기정	소로	3	17	6	국지 도로	95	중로 2-170	소로 2-14	일반 도로	-	인고2000-113 (2000.6.30)	

2) 주 차 장 : 변경없음

■ 주차장 결정(변경) 조서

구 분	도면 표시 번호	시설명	시설의 세분	위 치	면 적(㎡)			최초 결정일	비고
					기 정	변 경	변경후		
기정	1	검암1주차장	노외 주차장	검암동 607-1	2,653.9	-	2,653.9	인고93-130 ('93.9.28)	
기정	2	검암2주차장	노외 주차장	검암동 659	2,795.9	-	2,795.9	인고93-130 ('93.9.28)	
	계		2개소		5,449.8	-	5,449.8		

3) 공 원 : 변경

■ 공원 결정(변경) 조서

구분	도면 표시 번호	공원명		시설의 세 분	위 치	면적(㎡)			최초 결정일	비고
		기정	변경			기정	변경	변경후		
변경	2	검암2 근린공원	장모루 근린공원	근린공원	검암동 594-2	5,703.6	-	5,703.6	인고93-130 ( '93.9.28)	
변경	2	검암2 어린이공원	간재울 어린이공원	어린이공원	검암동 607-2	2,500.2	-	2,500.2	인고93-130 ( '93.9.28)	
기정	10	검암 근린공원	검암 근린공원	근린공원	검암동 636-9	654.2 (296,308.2)	-	654.2 (296,308.2)	건고66-2701 ( '66.8.31)	( )는 전체 면적
변경	3	검암3 어린이공원	중동 어린이공원	어린이공원	검암동 613-5	4,224.6	-	4,224.6	인고93-130 ( '93.9.28)	
변경	4	검암4 어린이공원	검바위 어린이공원	어린이공원	검암동 619-5	2,040.0	-	2,040.0	인고93-130 ( '93.9.28)	
변경	5	검암5 어린이공원	과기 어린이공원	어린이공원	검암동 657-2	2,394.7	-	2,394.7	인고93-130 ( '93.9.28)	
기정	6	검암6 어린이공원	빈정 어린이공원	어린이공원	검암동 681	6,983.5	-	6,983.5	인고93-130 ( '93.9.28)	
신설	7	-	검암 소공원	소공원	검암동 636-6	-	증)640.5	640.5		
	계			7개소		24,500.8	증)640.5	25,141.3		

■ 공원 결정(변경) 사유서

도면표시 번호	시 설 명	변경 내용	변경 사유
2	장모루 근린공원	공원 시설명 변경	◦ 지역의 유래 및 지명을 고려하여 공원명 변경
2	간재울 어린이공원	공원 시설명 변경	◦ 지역의 유래 및 지명을 고려하여 공원명 변경
3	중동어린이공원	공원 시설명 변경	◦ 지역의 유래 및 지명을 고려하여 공원명 변경
4	검바위 어린이공원	공원 시설명 변경	◦ 지역의 유래 및 지명을 고려하여 공원명 변경
5	과기 어린이공원	공원 시설명 변경	◦ 지역의 유래 및 지명을 고려하여 공원명 변경
6	빈정 어린이공원	공원 시설명 변경	◦ 지역의 유래 및 지명을 고려하여 공원명 변경
7	검암 소공원	- 공원(소공원) 신설 - 640.5㎡	서인천고등학교 앞 학생들의 휴식공간과 주민 을 위한 소공원 지정

4) 녹 지 : 변경없음

■ 녹지 결정(변경) 조서

구분	도면 표시 번호	시 설 명	시설의 세분	위 치	면적(㎡)			최초 결정일	비 고
					기 정	변 경	변경후		
기정	1	검암1녹지	완충녹지	검암동 595-1~666-4	3,794.4	-	3,794.4	인고93-130 (`93.9.28)	
	계		1개소		3,794.4	-	3,794.4		

5) 학 교 : 변경없음

■ 학교 결정(변경) 조서

구분	도면 표시 번호	시설명	시설의 세 분	위 치	면 적(㎡)			최초 결정일	비 고
					기 정	변 경	변경후		
기정	1	초등학교	초등학교	검암동 629-3	11,048.7	-	11,048.7	인고93-130 (`93.9.28)	
기정	2	중 학 교	중학교	검암동 619-4	12,307.4	-	12,307.4	인고93-130 (`93.9.28)	
기정	3	서인천 고등학교	고등학교	검암동 636-7	23,653.1	-	23,653.1	인고93-130 (`93.9.28)	
	계		3개소		47,009.2	-	47,009.2		

6) 공 공 청 사 : 변경없음

■ 공공청사 결정(변경) 조서

구분	도면 표시 번호	시설명	시설의 세 분	위 치	면적(㎡)			최초 결정일	비 고
					기 정	변 경	변경후		
기정	1	공공청사	동 사 무 소	검암동 606-8	1,050.1	-	1,050.1	인고93-130 (`93.9.28)	
기정	2	공공청사	소방파출소	검암동 606-9	1,050.3	-	1,050.3	인고93-130 (`93.9.28)	
기정	3	공공청사	우 체 국	경서동 660-2	679.8	-	679.8	인고93-130 (`93.9.28)	
기정	4	공공청사	파 출 소	경서동 660-3	682.2	-	682.2	인고93-130 (`93.9.28)	
	계		4개소		3,462.4	-	3,462.4		

7) 하 수 도 : 변경없음

■ 하수도 결정(변경) 조서

구분	도면 표시 번호	시설명	시설의 세 분	위 치	면적(㎡)			최초 결정일	비 고
					기 정	변 경	변경후		
기정	1	하수도	오수펌프장	검암동 594-1	411.5	-	411.5	인고2000-113 (2000.6.30)	
	계				411.5	-	411.5		

8) 사회복지시설 : 변경없음

■ 사회복지시설 결정(변경) 조서

구분	도면 표시 번호	시설명	위 치	면적(㎡)			최초 결정일	비 고
				기 정	변 경	변경후		
기정	1	사회복지시설	검암동 679-3	1,676.1	-	1,676.1	인고2004-258 (2005. 1. 3)	
	계			1,676.1	-	1,676.1		

라.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조성에 관한 도시계획결정(변경) 조서

1) 공동주택용지

■ 공동주택용지(A용도)의 가구 및 획지 결정(변경) 조서 : 변경없음

가구 번호	기			정	
	가구면적 (㎡)	획 지		비 고	
		위 치	면 적(㎡)		
2	58,233.4	2	380.4	공동건축	
		3	45,001.4		
		4	3,806.7		
		5	6,781.1	공동건축	
		6	2,263.8		
34	12,517.3	1	10,222.5	공동건축	
		2	745.0		
		3	1,549.8		
37	11,925.9	1	11,925.9		
56	11,746.4	1	11,293.8	공동건축	
		2	452.6		

2) 근린생활시설용지

- 필지규모 600㎡이상에 대하여 대지분할가능선수 지정.  
(단, 대지분할가능선을 조정하여 분할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1필지의 최소규모가 300㎡이상일 경우에만 가능)

■ 근린생활시설용지(B용도)의 가구 및 획지 결정(변경) 조서 : 변경없음

가구 번호	기			정
	가구면적 (㎡)	획 지		분할가능 획 지 수
		위치	면 적(㎡)	
6	2,715.2	1	810.9	4
		2	1,098.0	5
		3	806.3	4
7	5,255.3	1	1,460.7	6
		2	467.6	2
		3	696.2	2
		4	1,152.1	4
		5	302.2	-
		6	370.9	2
		7	805.6	4
8	4,438.0	1	264.5	-
		2	1,110.6	5
		3-1-1	301.2	-
		3-1-2	306.2	-
		3-1-3	305.4	-
		3-1-4	624.5	2
		3-1-5	305.5	-
		3-1-6	311.1	-
		3-1-7	306.9	-
		3-2	270.0	-
		4	332.1	2

가구 번호	기			정
	가구면적 (㎡)	획 지		분할가능 획 지 수
		위치	면 적(㎡)	
12	3,721.1	1	559.8	2
		2	523.1	2
		3	308.0	-
		4	167.1	-
		5	1,552.2	3
		6	330.5	-
		7	280.4	-
21	5,547.4	1	156.3	-
		2	235.2	-
		3	464.0	2
		4	668.0	2
		5-1	991.9	2
		5-2	2,040.0	5
		5-3	992.0	2
23	4,023.7	1	208.8	공동건축
		2	114.1	
		3	213.2	-
		4	523.5	-
		5	808.4	-
		6	718.7	2
		7	1,437.0	4
24	3,189.3	1	394.2	-
		2	1,082.4	3
		3-1	396.1	-
		3-2	430.0	-
		3-3	886.6	2

가구 번호	기 정			
	가구면적 (㎡)	획 지		분할가능 획 지 수
		위치	면 적(㎡)	
25	973.9	1	413.1	-
		2	560.8	2
26	1,654.2	1	121.4	-
		2	746.5	3
		3	786.3	3
40	3,554.9	1	1,371.9	6
		2	2,183.0	10
55	3,555.2	1	2,019.7	8
		2	1,535.5	6
58	4,745.5	1-1	1,322.4	6
		1-2	539.4	2
		1-3	539.4	2
		2	1,630.2	8
		3	714.1	2
77	3,854.6	1	1,886.4	8
		2	1,174.0	4
		3	794.2	3
82	3,711.4	1	394.4	2
		2	117.1	-
		3	230.9	-
		4	502.8	2
		5	159.9	-
		6	207.0	-
		7	235.3	-
		8	384.1	2
		9	221.5	-
		10	216.2	-
		11	129.8	-
		12	230.2	-
		12-1	90.0	-
		13	154.1	-
		14	311.0	-
15	127.1	-		
85	1,260.1	1	1,260.1	4

가구 번호	기			정
	가구면적 (㎡)	획 지		분할가능 획 지 수
		위치	면 적(㎡)	
86	4,194.3	1-1	330.3	-
		1-2	342.7	-
		1-3	231.2	-
		2	218.4	-
		3	334.0	-
		4	311.3	-
		5	197.1	-
		6	1,708.1	3
		7	186.3	-
		8	334.9	-
91	3,585.2	1	694.1	3
		2	752.5	2
		3	600.9	2
		4	124.6	-
		5-1-1	378.1	2
		5-1-2	218.9	-
		5-2	816.1	4
92	5,498.6	1	1,319.7	6
		2	378.5	2
		3	1,902.4	8
		4	1,021.6	4
		5	509.0	2
		6	367.4	2

가구 번호	기			정
	가구면적 (㎡)	획 지		분할가능 획 지 수
		위치	면 적(㎡)	
93	3,769.4	1	1,081.8	2
		2	1,007.3	2
		3	499.8	-
		4	424.1	-
		5	270.8	-
		6	485.6	-
94	4,165.7	1	294.1	-
		2	284.2	-
		3	139.2	-
		4	515.0	2
		5-2	363.1	2
		5-3	316.6	-
		5-4	342.5	-
		6	262.5	-
		7	202.7	-
		8	246.9	-
		9	213.2	-
		10	225.1	-
		11	150.8	-
		12	183.7	-
13	184.0	-		
14	242.1	-		
100	2,592.6	1	628.3	2
		2	336.8	-
		3	378.2	-
		4-1	350.4	-
		4-2-1	329.6	-
		4-2-2	334.6	-
		5	234.7	-

가구 번호	기			정
	가구면적 (㎡)	획 지		분할가능 획 지 수
		위치	면 적(㎡)	
101	2,526.9	1	923.0	4
		2	707.9	4
		3	896.0	4
103	3,784.1	1-1	301.5	-
		1-2	262.5	-
		1-3	222.1	-
		2	165.1	-
		3	222.4	-
		4	315.4	-
		5	984.8	5
		6	175.1	-
		7	221.7	-
		8	156.6	-
		9	756.9	3
106	5,585.6	1	195.0	-
		2	469.3	2
		3	209.1	-
		4	839.4	4
		6	487.3	2
		5	245.3	-
		7	168.3	-
		8	741.9	2
		9	315.6	-
		10	325.5	2
		11	118.8	-
		12	237.5	-
		13	159.0	-
		14	245.1	-
		15	443.5	2
		16	385.0	2

3) 단독주택용지

- 필지규모 400㎡이상에 대하여 대지분할가능선수 지정.  
(단, 대지분할가능선을 조정하여 분할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1필지의 최소규모가 200㎡이상일 경우에만 가능)

■ 단독주택용지(C용도)의 가구 및 획지 결정(변경) 조서 : 변경없음

가구 번호	기 정			
	가구면적 (㎡)	획 지		분할가능 획 지 수
		위치	면 적(㎡)	
18	4,502.8	1	223.8	-
		2-1	639.1	4
		2-2	398.6	2
		2-3	523.5	2
		3	746.1	2
		4-1	200.5	-
		4-2	893.0	3
		4-3	496.0	2
		5	382.2	2
19	2,987.7	1-1	405.1	2
		1-2	380.9	2
		1-3	293.0	-
		2	195.6	-
		3	310.2	-
		4	149.2	-
		5	120.1	-
		6	156.7	-
		7	190.7	-
		8	146.0	-
		9	144.9	-
20	3,359.9	10	495.3	2
		1	1,428.0	6
		2	421.7	2
		3	570.7	2
		4	779.4	3
		5	160.1	-

가구 번호	기			정
	가구면적 (㎡)	획 지		분할가능 획 지 수
		위치	면 적(㎡)	
25	5,566.6	3	1,459.6	5
		4	1,395.2	5
		5-1	517.7	2
		5-2	532.2	2
		6	1,049.8	4
		7	214.3	공동건축
		8	113.1	
		9	284.7	
		26	1,731.9	5
6	244.9			-
7	1,025.0			4
27	1,322.1	1	421.4	2
		2	459.2	2
		3	441.5	2
28	2,918.6	1	322.0	-
		2	423.4	2
		3	633.4	3
		4	274.7	-
		5-1	835.3	4
		5-2	429.8	2
29	3,590.7	1-1	441.8	2
		1-2	208.0	-
		1-3	208.0	-
		1-4	208.0	-
		1-5	208.0	-
		1-6	208.0	-
		1-7	208.0	-
		1-8	208.0	-
		1-9	208.0	-
		1-10	208.0	-
		1-11	208.0	-
		1-12	441.5	2
		2	333.6	-
		3	293.8	-

가구 번호	기			정
	가구면적 (㎡)	획 지		분할가능 획 지 수
		위치	면 적(㎡)	
30	4,675.1	1	1,229.1	3
		2	484.3	-
		3	393.4	-
		4	295.4	-
		5	465.1	-
		6	1,192.1	4
		7	615.7	2
31	2,931.8	1	396.3	-
		2	777.5	2
		3	1,122.7	3
		4	406.3	2
		5	229.0	-
33	3,018.8	1	1,300.0	5
		3	1,468.1	8
		4	250.7	-
41	3,268.4	1	959.5	4
		2-1-1	899.8	4
		2-1-2	898.9	4
		3	510.2	2
42	4,197.7	1	2,707.0	12
		2	1,490.7	6
43	5,218.1	1	293.3	-
		2	213.1	-
		4	253.4	-
		5	720.2	2
		6	277.3	-
		7	106.3	-
		8	389.3	-
		9	649.5	2
		10-1	991.7	3
		10-2-1	772.1	-
		10-2-2	551.9	-

가구 번호	기			정
	가구면적 (㎡)	획 지		분할가능 획 지 수
		위치	면 적(㎡)	
44	4,200.6	1	246.8	-
		2	274.4	-
		3	104.0	-
		4	127.8	-
		5	385.2	2
		6	380.8	2
		8	167.9	-
		9	219.2	-
		10	317.5	-
		11	161.7	-
		12	185.1	-
		13	427.8	2
		14	127.4	-
		15	195.7	-
		16	161.0	-
		17	214.3	-
		18	145.7	-
		19	358.3	-
		45	5,997.3	1
2	572.8			2
3-1	243.5			-
3-2	297.4			-
4	111.1			-
5	345.7			-
6	364.5			2
7	399.3			2
8	237.1			-
9	826.5			4
10	323.0			-
11	233.2			-
12	135.9			-
13	154.6			-
14	94.4			-
15	529.6	2		

가구 번호	기			정 분할가능 획 지 수
	가구면적 (㎡)	획 지		
		위치	면 적(㎡)	
46	1,451.9	1-1	385.5	-
		1-2-1	288.7	-
		1-2-2	288.6	-
		2	200.0	-
		3	289.1	-
47	2,558.5	1	566.4	3
		2	640.2	3
		3	191.4	-
		4-1	284.2	-
		4-2	876.3	4
50	1,422.8	1	949.3	4
		2	290.0	-
		3	90.2	-
		4	93.3	-
51	4,943.5	1	922.5	4
		2-1	422.3	-
		2-2	264.7	-
		2-3	264.7	-
		2-4	264.7	-
		2-5	264.7	-
		2-6	264.7	-
		2-7	264.7	-
		2-8	422.3	-
		2-9	264.7	-
		2-10	264.7	-
		2-11	264.7	-
		2-12	264.7	-
		2-13	264.7	-
		2-14	264.7	-
53	2,403.1	2	201.3	-
		3	403.8	2
		4	1,147.5	4
		5	384.2	2
		6	266.3	-
54	4,957.0	1	243.2	-
		2	323.1	-
		3	521.6	2
		4	203.0	-
		5	1,156.9	4
		6	706.2	2
		7	1,387.6	6
		9	415.4	2

가구 번호	기			정
	가구면적 (㎡)	획 지		분할가능 획 지 수
		위치	면 적(㎡)	
59	2,761.5	1	359.6	-
		2-1	356.9	-
		2-2	356.9	-
		2-3	357.0	-
		2-4	357.0	-
		2-5	357.1	-
		2-6	357.0	-
		3	260.0	-
60	3,110.9	1-1	1,398.2	6
		1-2	668.4	2
		2	327.4	-
		3	201.8	-
		4	192.6	-
		5	322.5	-
61	3,309.7	1-1-1	283.7	
		1-1-2	283.5	
		1-2	597.9	2
		2	730.0	2
		3	206.1	-
		4	944.2	4
		5	264.3	-
62	5,726.7	1	1,252.9	6
		2-1	385.0	2
		2-2	396.6	2
		3	1,822.7	5
		4	222.9	-
		5	120.5	-
		6	255.1	-
		7	1,271.0	4
63	4,948.0	1	1,122.5	4
		2	411.1	2
		3	136.0	-
		4	379.9	2
		5	2,379.0	11
		6	519.5	2

가구 번호	기			정
	가구면적 (㎡)	획 지		분할가능 획 지 수
		위치	면 적(㎡)	
64-1	1,523.8	1	90.1	-
		2	385.9	2
		3	407.3	2
		4	640.5	-
64-2	2302.1	1	870.6	4
		2-1	478.6	2
		2-2	952.9	4
64-3	1,654.6	1	1,654.6	4
		-	-	-
65	3,887.7	1	832.5	4
		2	1,838.2	6
		3	370.4	-
		4	162.0	-
		5	168.0	-
		6	516.6	2
66	477.3	1	96.3	-
		2	381.0	2
67	3,160.0	1	720.6	3
		2	689.7	3
		3	155.1	-
		4	885.5	4
		5	311.8	-
		6	182.6	-
		7	116.7	공동건축
		8	98.0	
68	3,114.9	1	894.0	4
		2	559.1	2
		3	420.8	2
		4	259.2	-
		5	113.1	-
		6	110.7	-
		7	115.5	-
		8	145.6	-
		9	496.9	2

가구 번호	기			정
	가구면적 (㎡)	획 지		분할가능 획 지 수
		위치	면 적(㎡)	
73	3,485.4	1	105.9	-
		2	96.9	-
		3	331.8	-
		4-1	383.0	2
		4-2	380.3	2
		5	227.9	-
		6	472.9	2
		7	254.4	-
		8	292.9	-
		9	371.7	2
		10	344.2	-
11	223.5	-		
74	2,650.1	1	681.9	3
		2	297.5	-
		3	378.1	2
		4	1,292.6	6
75	2,118.7	1	785.3	3
		2	147.7	-
		3	1,185.7	6
76	4,707.2	1	760.4	4
		2	3,505.9	8
		3	347.4	-
		4	93.5	-
78	5,359.8	1-1	1,031.1	3
		1-2-1-1	1,052.7	3
		1-2-1-2	340.4	-
		1-2-2	348.2	-
		2	2,587.4	8
79	4,938.6	1	665.8	2
		2	628.0	2
		3	1,316.8	4
		4-1	469.6	-
		4-2	466.2	-
		5	1,392.2	4

가구 번호	기			정
	가구면적 (㎡)	획 지		분할가능 획 지 수
		위치	면 적(㎡)	
69	3,740.6	1-1	395.3	-
		1-2	231.6	-
		2	876.7	4
		3-1	292.7	-
		3-2	284.5	-
		3-3	284.6	-
		3-4	292.7	-
		4	210.0	-
		5	174.1	-
		6	117.8	-
		7	255.7	-
		8	170.5	-
70	3,9991.0	1-1	248.0	-
		1-2	231.5	-
		1-3	231.6	-
		1-4	281.0	-
		1-5	259.6	-
		1-6	259.3	-
		2	112.8	-
		3-1	887.1	4
		4-1	237.8	-
		4-2	238.0	-
		4-3	232.0	-
		4-4	288.4	-
		4-5	244.0	-
		4-6	239.9	-
		71	3,684.9	1-1
1-2	228.1			-
1-3	228.1			-
1-4	228.1			-
2	979.9			4
3	777.2			3
4	267.8			-
5	744.6			4
72	3,683.0	1	1,032.0	4
		2-1	1,587.4	6
		3	144.3	-
		4	487.1	2
		5	432.2	2

가구 번호	기 정			
	가구면적 (㎡)	획 지		분할가능 획 지 수
		위치	면 적(㎡)	
80	1,576.7	1	462.8	2
		2	454.1	2
		3	659.8	2
81	5,358.2	1	677.9	2
		2	1,023.4	3
		3	866.9	2
		4	366.0	-
		5	150.8	-
		6	204.2	-
		7	303.3	-
		8	195.1	-
		9	498.7	2
		10	396.4	-
		11	415.0	2
		12	260.5	-
83	5,268.2	1	313.6	-
		2	412.1	2
		3	232.5	-
		4	235.2	-
		5	398.2	-
		6-1	677.3	2
		6-3	299.9	-
		6-4	339.9	-
		6-5	362.0	-
		6-6	362.0	-
		6-7	362.0	-
		7	217.7	-
		8	467.1	-
9	588.7	2		

가구 번호	기			정
	가구면적 (㎡)	획 지		분할가능 획 지 수
		위치	면 적(㎡)	
89	3,816.7	1	2,872.9	10
		3	228.3	-
		4	186.0	-
		5	529.5	2
90	2,452.2	1	1,566.2	6
		2-1	428.0	-
		2-2	458.0	-
95	5,973.0	1	470.5	2
		2	319.2	-
		3	259.2	-
		4-1	363.9	-
		4-2	363.9	-
		5	1,494.5	6
		6	1,863.2	6
		7	145.6	-
		8	190.5	-
		9	260.4	-
		10	107.1	-
96	1,241.6	11	135.0	-
		2	325.6	-
		3	134.6	-
		4	104.6	-
		5	217.1	-
		6	459.7	2
97	2,041.9	2	1,126.7	4
		3	438.2	2
		4	274.5	-
		5	202.5	-
98	2,175.6	1	833.7	3
		2	558.1	2
		3	181.0	-
		4	94.5	-
		5	229.1	-
		6	279.2	-
99	4,931.3	1	1,138.0	4
		2-1	796.3	2
		2-2	826.6	2
		3	651.2	2
		4	198.9	-
		5	500.1	2
		6	593.7	2
7	226.5	-		

가구 번호	기			정
	가구면적 (㎡)	획 지		분할가능 획 지 수
		위치	면 적(㎡)	
87	4,231.6	1	699.0	3
		2	96.8	-
		3-1	295.3	-
		3-2	295.3	-
		3-3	295.3	-
		3-4	294.0	-
		4	260.6	-
		5	166.4	-
		6	205.4	-
		7	221.9	-
		8	247.7	-
		9	123.1	-
		10	231.8	-
		11	236.3	-
88	7,913.4	1-1	739.8	-
		1-2	412.0	-
		1-3	427.6	-
		1-4	435.8	-
		1-5	492.9	-
		1-6	499.7	-
		1-7	968.6	-
		1-8	989.8	-
		1-9	498.8	-
		1-10	484.2	-
		1-11	421.3	-
		1-12	409.1	-
		1-13	399.3	-
		1-14	734.5	-

가구 번호	기			정
	가구면적 (㎡)	획 지		분할가능 획 지 수
		위치	면 적(㎡)	
100	1,151.1	6	189.9	-
		7	346.5	-
		8	614.7	2
102	1,690.2	1	614.2	2
		2	1,076.0	4
104	4,042.8	1-1	570.0	2
		1-2-1	461.2	-
		1-2-2	297.5	-
		2-1	484.8	2
		2-2	653.9	2
		3	141.8	-
		4	315.9	-
		5	400.8	-
		6	372.0	-
		7	344.9	-
105	3,371.3	1	1,687.9	5
		2-1	415.1	2
		2-2	501.4	2
		3	327.7	2
		4	439.2	2
107	9,486.6	1	4,229.9	10
		2	1,507.9	4
		3	575.3	2
		4	413.5	2
		5	191.0	-
		6	2,569.0	6
108	3,101.1	1	3,101.1	13
110	2,683.5	1	577.5	2
		2	1,017.9	4
		3	387.7	2
		4	483.9	2
		5	216.5	-

가구 번호	기			정
	가구면적 (㎡)	획 지		분할가능 획 지 수
		위치	면 적(㎡)	
111	4,136.7	1	3,995.6	12
		2	141.1	-
112	2,962.6	1	360.7	-
		2	1,900.1	5
		3	572.5	2
		4	129.3	-

4) 종교집회장용지 : 변경없음

- 종교집회장용지(F용도)의 가구 및 획지 결정(변경) 조서

가구 번호	기			정
	가구면적 (㎡)	획 지		비 고
		위치	면 적(㎡)	
44	1,308.0	7	271.0	공동건축
		20	1,037.0	
68	511.5	10	511.5	
96	2,961.5	7	2,961.5	

마. 건축물에 대한 용도·건폐율·용적률·높이·배치·형태·색채·건축선에 관한 도시계획결정(변경) 조서

1) 공동주택용지

■ 공동주택용지(A용도) 결정 조서 : 변경없음

도면번호	위 치 (가구번호)	구 분	계 획 내 용		
			기 정	변 경	
2(2~6),34,37,56	2(2~6),34,37,56 (공동주택지A용도)	용도	허용용도	· 별표1의 A 지정 및 권장용도	· 변경 없음
			불허용도	· 별표1의 A 불허 용도	
		건 폐 율	· 20%이하	· 변경 없음	
		용 적 륜	· 250%이하	· 변경 없음	
		높 이	· 19층이하	· 변경 없음	
		형 태	· 별표2의 A	· 변경 없음	
		배 치	· 별표3의 A	· 변경 없음	
		색 채	· 별표4의 A	· 변경 없음	
		건 축 선	-	-	

2) 근린생활시설 용지

■ 근린생활시설용지(B용도) 결정 조서 : 변경없음

도면번호	위 치 (가구번호)	구 분	계 획 내 용		
			기 정	변 경	
6(1~3),7,8,12,21, 23(1~7),24,25(1~2),26 (1~3),40,55,58,77, 82,85(1),86,91,92),93,9 4,100(1~4-2),101,103, 106	6(1~3),7,8,12,21, 23(1~7),24,25(1~2),26 (1~3),40,55,58,77, 82,85(1),86,91,92),93,9 4,100(1~4-2),101,103, 106 (근린생활시설용지B용도)	용도	허용용도	· 별표1의 B 지정 및 권장용도	· 변경 없음
			불허용도	· 별표1의 B 불허용도	
		건 폐 율	· 50%이하	· 변경 없음	
		용 적 륜	· 200%이하	· 변경 없음	
		높 이	· 4층이하	· 변경 없음	
		형 태	· 별표2의 B	· 변경 없음	
		배 치	· 별표3의 B	· 변경 없음	
		색 채	· 별표4의 B	· 변경 없음	
		건 축 선	-	-	

3) 단독주택용지

■ 단독주택용지(C1용도) 결정 조서 : 변경(8m도로에 접하는 획지에 한함)

도면번호	위 치	구 분	계 획 내 용		
			기 정(C)	변 경(C1)	
18(1,2,2-1,2-2,2-3,3,4-1,4-2,4-3),19(1-1,1-2,1-3,2,6~10),20(5),25(3,5-2,6),27(1~3),28(1~3,5-1),29(1-7~12),30(1~7),31(1,2,5),42(1~2),43(1,2,4~9,10-1,10-2-1~2),44(14~19),45(4~7),46(1-1,1-2-1~2,2,3),47(1~3,4-1-1~2),50(1~4),53(2~4),54(1,4),59(2-4~5,3),60(1-1~2,2~5),61(1-1-1~2,5),62(2-2,3~4),64-1(1~3),64-2(1,2-1~2),64-3(1),65(2),66(2),67(1~8),68(1~9),69(1-1~2,2,3-1~4,4~9),70(1-4~6,4-1),72(3~4),73(3,4-1,5~6),74(2~3),75(2),76(1~4),78(1-1,1-2-1-1~2,1-2-2),79,(1~3,4-1~2,5),80(1~3),81(1,9~12),83(6-5~7,7~9),87(1~2,3-1~3,5~14),88(1,1-1~6,1-1~14),89(3),90(1,2-1~2),95(2~3,7~8),96(2~6),97(4~5),102(1~2),104(1-1,1-2-1~2,2-1~2,3~7),105(1,2-1~2,3~4),107(1~5),110(1~5),111(1~2),112(1~4)	18(1,2,2-1,2-2,2-3,3,4-1,4-2,4-3),19(1-1,1-2,1-3,2,6~10),20(5),25(3,5-2,6),27(1~3),28(1~3,5-1),29(1-7~12),30(1~7),31(1,2,5),42(1~2),43(1,2,4~9,10-1,10-2-1~2),44(14~19),45(4~7),46(1-1,1-2-1~2,2,3),47(1~3,4-1-1~2),50(1~4),53(2~4),54(1,4),59(2-4~5,3),60(1-1~2,2~5),61(1-1-1~2,5),62(2-2,3~4),64-1(1~3),64-2(1,2-1~2),64-3(1),65(2),66(2),67(1~8),68(1~9),69(1-1~2,2,3-1~4,4~9),70(1-4~6,4-1),72(3~4),73(3,4-1,5~6),74(2~3),75(2),76(1~4),78(1-1,1-2-1-1~2,1-2-2),79,(1~3,4-1~2,5),80(1~3),81(1,9~12),83(6-5~7,7~9),87(1~2,3-1~3,5~14),88(1,1-1~6,1-1~14),89(3),90(1,2-1~2),95(2~3,7~8),96(2~6),97(4~5),102(1~2),104(1-1,1-2-1~2,2-1~2,3~7),105(1,2-1~2,3~4),107(1~5),110(1~5),111(1~2),112(1~4) 단독주택용지C1	용도	허용용도	· 별표1의 C 지정 및 권장용도	· 별표1의 C1 지정 및 권장용도
			권장용도	· 별표1의 C 불허용도	· 별표1의 C1 불허용도
		건 폐 율	· 50%이하	· 변경없음	
		용 적 륜	· 150%이하	· 변경없음	
		높 이	· 3층이하	· 변경없음	
		형 태	· 별표2의 C	· 별표2의 C1	
		배 치	· 별표3의 C	· 별표3의 C1	
		색 채	· 별표4의 C	· 변경없음	
		건 축 선	-	-	

■ 단독주택용지(C2용도) 결정 조서 : 변경(10m도로에 접하는 획지에 한함)

도면번호	위 치	구 분	계 획 내 용		
			기 정(C)	변 경(C2)	
18(5),19(3~5),20(1~4), 25(4,5-1,6~9),28(4,5- 2),29(1-1~6,2~3),31(3 ~4),41(1,2-1-1~2,3),4 4(1~6,8~13),45(1~2,3 -1~2,8~11,15),51(2-8 ~14),53(4~6),54(2~3,5) ,59(2-6),61(1-2,2~4),6 2(2-1,5~7),70(1-1~3, 2,3-1,4-2~6),71(5),72 (5),73(1~2),74(1,4),76 (2),83(3~5,6-1,6-3~4) ,95(1,4-1~2,5~6,9~11) ,97(2~3),98(3~5),99(1) ,107(1)	18(5),19(3~5),20(1~4), 25(4,5-1,6~9),28(4,5- 2),29(1-1~6,2~3),31(3 ~4),41(1,2-1-1~2,3),4 4(1~6,8~13),45(1~2,3 -1~2,8~11,15),51(2-8 ~14),53(4~6),54(2~3,5) ,59(2-6),61(1-2,2~4),6 2(2-1,5~7),70(1-1~3, 2,3-1,4-2~6),71(5),72 (5),73(1~2),74(1,4),76 (2),83(3~5,6-1,6-3~4) ,95(1,4-1~2,5~6,9~11) ,97(2~3),98(3~5),99(1) ,107(1) 단독주택용지 C2	용도	권장 용도	· 별표1의 C 지정 및 권장용도	· 별표1의 C2 지정 및 권장용도
			불허 용도	· 별표1의 C 불허용도	· 별표1의 C2 불허용도
		건 폐 율	· 50%이하	· 변경없음	
		용 적 륜	· 150%이하	· 변경없음	
		높 이	· 3층이하	· 변경없음	
		형 태	· 별표2의 C	· 별표2의 C2	
		배 치	· 별표3의 C	· 별표3의 C2	
		색 채	· 별표4의 C	· 변경없음	
		건 축 선	-	-	

■ 단독주택용지(C3용도) 결정 조서 : 변경(12m도로에 접하는 획지에 한함)

도면번호	위 치	구 분	계 획 내 용		
			기 정(C)	변 경(C3)	
33(1,3,4),51(1,2-1~7), .53(4),54(6~8),59(1,2 -1~3),62(1),63(1,3,5~ 6),65(1,3~6),71(1-1~ 4,2),72(1,2-1),73(4-2, 7~11),75(1,3),78(2),8 1(2~8),83(1~2),87(3- 4,4),88(1-7~8),89(1,4 ~5),107(1,6),108(1)	33(1,3,4),51(1,2-1~7), .53(4),54(6~8),59(1,2 -1~3),62(1),63(1,3,5~ 6),65(1,3~6),71(1-1~ 4,2),72(1,2-1),73(4-2, 7~11),75(1,3),78(2),8 1(2~8),83(1~2),87(3- 4,4),88(1-7~8),89(1,4 ~5),107(1,6),108(1) 단독주택용지 C3	용도	권장 용도	· 별표1의 C 지정 및 권장 용도	· 별표1의 C3 지정 및 권장 용도
			불허 용도	· 별표1의 C 불허용도	· 별표1의 C3 불허용도
		건 폐 율	· 50%이하	· 변경없음	
		용 적 륜	· 150%이하	· 변경없음	
		높 이	· 3층이하	· 변경없음	
		형 태	· 별표2의 C	· 별표2의 C3	
		배 치	· 별표3의 C	· 별표3의 C3	
		색 채	· 별표4의 C	· 변경없음	
		건 축 선	-	-	

4) 교육시설용지

■ 교육시설용지(D용도) 결정 조서 : 변경없음

도면번호	위 치	구 분	계 획 내 용	
			기 정	변 경
46(4),57,64	46(4),57,64 (교육시설용지D용도)	용 도	· 학교	· 변경없음
		건 폐 율	· 30%이하	· 변경없음
		용 적 륜	· 150%이하	· 변경없음
		높 이	· 5층이하	· 변경없음
		형 태	-	-
		배 치	-	-
		색 채	-	-
		건 축 선	-	-

5) 공공청사용지

■ 공공청사용지(E용도) 결정 조서 : 변경없음

도면번호	위 치	구 분	계 획 내 용	
			기 정	변 경
23(8,9),85(2,3)	23(8,9),85(2,3) (공공청사용지E용도)	용 도	· 공공청사	· 변경없음
		건 폐 율	· 50%이하	· 변경없음
		용 적 륜	· 200%이하	· 변경없음
		높 이	· 4층이하	· 변경없음
		형 태	-	-
		배 치	-	-
		색 채	-	-
		건 축 선	-	-

6) 종교용지

■ 종교용지(F용도) 결정 조서 : 변경없음

도면번호	위 치	구 분	계 획 내 용	
			기 정	변 경
44(7,20),68(10),96(7)	44(7,20),68(10),96(7) (종교용지F용도)	용 도	· 종교집회장	· 변경없음
		건 폐 율	· 50%이하	· 변경없음
		용 적 률	· 200%이하	· 변경없음
		높 이	· 4층이하	· 변경없음
		형 태	-	-
		배 치	-	-
		색 채	-	-
		건 축 선	-	-

7) 사회복지시설용지

■ 사회복지시설용지(G용도) 결정 조서 : 변경

도면번호	위 치	구 분	계 획 내 용	
			기 정	변 경
90(3)	90(3) (사회복지시설용지G용도)	용 도	· 사회복지시설	· 별표1 G용도의 지정 및 권장 용도
		건 폐 율	· 50%이하	· 변경없음
		용 적 률	· 200%이하	· 변경없음
		높 이	· 4층이하	· 변경없음
		형 태	-	-
		배 치	-	-
		색 채	-	-
		건 축 선	-	-

바. 기타사항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

**[별표 1]** : 건축물 용도 분류표 : 변경

**[별표 2]** : 건축물 형태 분류표 : 변경

**[별표 3]** : 건축물 배치 분류표 : 변경

**[별표 4]** : 건축물의 색채 분류표 : 변경없음

**[별표 5]** : 차량동선·주차시설·단지내 시설물에 관한 계획 : 변경

**[별표 6]** : 도시계획도로에 관한 계획 : 변경없음

**[별표 7]** : 옥외광고물 설치기준 : 변경없음

**[별표 8]** : 기타사항 : 변경없음

[별표 1]

건축물 용도 분류표 (기정)

구분	A	B	C	D	E	F	G
지정용도	·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- 공동주택 중 아파트	-	-	·학교	·공공청사	·종교집회장	·사회복지시설 (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시설)
권장용도	-	·건축법시행령에 의한 -단독주택 -공동주택 (아파트 제외) -제1종 근린생활시설 -제2종 근린생활시설 (단, 안마시술소, 단란주점, 골프연습장 제외) -문화 및 집회시설 중 종교집회장 (타종 및 확장장치 없는 것에 한함) -교육연구 및 복지시설 중 아동관련시설, 노인 복지시설, 사회복지시설 및 근로복지시설 -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중 석유 및 액화가스 판매소 -자동차 관련시설 중 주차장, 세차장	·건축법시행령에 의한 - 단독주택 - 공동주택 (아파트 제외) - 제1종근린생활시설 (단, 1층에 한함)	-	-	-	-
불허용도	· 지정용도, 권장용도 이외의 용도 · 지하층 주거용도 · 학교보건법 제5조 규정에 의한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에 해당되는 지역에서 학교보건법 제6조에 해당되는 용도						

- 주1) 단독주택지(C)의 경우 경사지붕내에 설치하는 다락의 층고를 1.5m초과 1.8m이하로 설치시 건축물의 높이는 다락층을 포함하여 4층이하, 용적률 180%이하로 완화
- 주2) 대지분할가능선 획지의 공동주차 통로는 미분할시 차량출입불허구간을 피하여 적정 위치 선정 가능
- 주3) 단독주택(다가구주택) 및 공동주택(연립주택 및 다세대주택)은 가구 및 세대당 1대의 주차면수 확보에 한함.

[별표 1]

건축물 용도 분류표 (변경)

구분	A	B	C1	C2	C3	D ~ G
지정용도	·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-공동주택 중 아파트	-	-	-	-	· 변경없음
권장용도	-	· 건축법시행령에 의한 -단독주택 -공동주택 (아파트 제외) -제1종 근린생활시설 -제2종 근린생활시설 (단, 안마사술소, 단란주점, 골프연습장 제외) -문화 및 집회시설 중 종교집회장 (타종 및 확장장치 없는 것에 한함) -교육연구 및 복지시설 중 아동관련시설, 노인 복지시설, 사회 복지 시설 및 근로복지시설 -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중 석유 및 액화가스 판매소 -자동차 관련시설 중 주차장, 세차장	· 건축법시행령에 의한 -단독주택 -공동주택 (아파트 제외) -제1종 근린생활시설 (단, 1층에 한함)	· 건축법시행령에 의한 -단독주택 -공동주택 (아파트 제외) -제1종 근린생활시설 (단, 1층에 한함) -제2종 근린생활시설 · 재교점(제1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되지 않은 것) · 서점(제1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되지 않은 것) · 사진관, 표구점, 학원 (자동차, 무도학원 제외), 독서실 · 부동산 중개업소 -교육연구시설(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) · 도서관 -노유자시설 · 아동관련시설 (영유아보육시설· 아동 복지 시설· 유치원)	· 건축법시행령에 의한 -단독주택 -공동주택 (아파트 제외) -제1종 근린생활시설 (단, 1층에 한함) -제2종 근린생활시설 · 재교점(제1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되지 않은 것) · 서점(제1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되지 않은 것) · 사진관, 표구점, 학원 (자동차, 무도학원 제외), 독서실 · 부동산 중개업소 -교육연구시설(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) · 도서관 - 노유자시설 · 아동관련시설(영유아보육시설· 아동 복지 시설· 유치원) -문화 및 집회시설 · 전시장(박물관· 미술관· 기념관, 12m이상 도로에 12m 접함)	· 변경없음 (D~F용도) · G용도 -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제조업소(식품제조업) (단 결식아동 및 사회복지사업에 한하며 지하1층에 한함)
불허용도	· 지정용도, 권장용도 이외의 용도 · 지하층 주거용도 · 제1종 근린생활시설 중 건축자재 소매점 · 학교보건법 제5조 규정에 의한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에 해당되는 지역에서 학교보건법 제6조에 해당되는 용도					

- 주1) 단독주택지(C)의 경우 경사지붕내에 설치하는 다락의 층고를 1.5m초과 1.8m이하로 설치 시 건축물의 높이는 다락층을 포함하여 4층이하, 용적률 180%이하로 완화
- 주2) 대지분할가능선 획지의 공동주차 통로는 미분할시 차량출입불허구간을 피하여 적정 위치 선정 가능
- 주3) 단독주택(다가구주택) 및 공동주택(연립주택 및 다세대주택)은 가구 및 세대당 1대의 주차면수 확보에 한함.
- 주4) 단독주택용지 제1종 근린생활시설 1층의 높이는 4미터를 초과할 수 없으며, 지붕의 형태는 경사지붕을 유도하되 다른형태의 지붕은 『인천광역시 서구 건축위원회』 심의를 거쳐 결정
- 주5) 권장용도(C1,C2,C3)는 도로폭원에 따라 완화하고 있으나 도로모퉁이변(도로폭원이 상이한 부분에 접하는 획지)에 대해서는 도로폭원이 큰 것에 접하는 도로변의 용도를 허용

[별표 2]

건축물 형태 분류표 (기정)

용도	도면 표시	건축물의 형태
공동주택용지	-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· 아파트 1동의 전면길이는 건축물의 높이에 반비례되도록 유도하며, 시각적 개방감 부여 및 심리적 중압감 배제 등을 위해 주동의 최대길이는 80m 이내로 제한</li> <li>※ 주동길이라 함은 수직면에 수평투영한 길이 중 최대길이를 말함. “ㄱ, ㄴ”자 형태의 아파트 주동길이는 가장 거리가 먼 외벽 대각선의 길이를 말함</li> <li>· 아파트의 지붕형태는 경사지붕 설치를 권장(구배는 3/10~7/100이 되도록 함)              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경사지붕이라 함은 건축물 지붕면적의 70%이상을 경사지붕으로 설치한 지붕을 말함</li> <li>- 경사지붕 설치시 옥상의 설비기기 등 경관불량요소는 건축물전면에서 보이지 않도록 설치</li> </ul> </li> </ul>
근린생활시설용지	-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· 건축물의 외벽은 골조가 노출되어서는 아니되며 의장, 재료, 색채에 있어 3면이상의 벽면에서 통일성을 유지하여야 함</li> <li>· 옥상의 이용              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옥상부분의 옥외창고로의 이용 규제 및 물건을 그대로 방치하지 못하게 함</li> <li>- 부득이 옥상을 야적장으로 사용해야 할 경우에는 지상에서 보이지 않게 하고, 주변 고층 건물에서 보이지 않도록 간이지붕 설치</li> </ul> </li> <li>· 지하층으로 통하는 출입구와 계단은 건물내부에 설치하도록 권장</li> <li>· 근린생활시설의 1층 셔터는 벽면의 50% 이상을 투시형으로 설치</li> <li>· 벽식 피로티 설치 기준안(신설)              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피로티 지상층 바닥은 도로면으로 부터 ±15cm 이내로 설치</li> <li>- 피로티 기둥의 폭은 1m 이내로 할 것</li> </ul> </li> </ul>
단독주택용지	-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· 지붕의 형태는 경사지붕 설치를 유도              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경사지붕이라함은 건축물 지붕면적의 70% 이상을 경사지붕으로 설치한 지붕을 말함</li> </ul> </li> <li>· 경사지붕의 설치시의 구배는 3/10~7/100이 되도록 함              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경사각을 갖는 외벽의 일부나 지붕의 방향은 주위건물과 일치시킴</li> </ul> </li> <li>· 옥상의 이용              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옥상부분의 옥외창고로의 이용 규제 및 물건을 그대로 방치하지 못하게 함</li> <li>- 부득이 옥상을 야적장으로 사용해야 할 경우에는 지상에서 보이지 않게 하고, 주변 고층 건물에서 보이지 않도록 간이지붕 설치</li> </ul> </li> <li>· 건축물의 외벽은 블록별로 유사한 재료 사용(외벽색상은 원색사용을 지양하여 우리동네라는 분위기 창출을 위한 공간형성)</li> <li>· 건축물의 외벽은 골조가 노출되어서는 아니되며 의장, 재료, 색채에 있어 3면 이상의 벽면에서 통일성을 유지하여야 함</li> <li>· 단독주택, 다세대주택, 연립주택은 지하층의 주거용도 이용을 금지토록하여 쾌적한 주거환경 유도</li> <li>· 벽식 피로티 설치 기준안(신설)              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피로티 지상층 바닥은 도로면으로 부터 ±15cm 이내로 설치</li> <li>- 피로티 기둥의 폭은 1m 이내로 할 것</li> </ul> </li> </ul>

[별표 2]

건축물 형태 분류표 (변경)

용도	도면 표시	건축물의 형태
공동주택 용지	-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· 아파트 1동의 전면길이는 건축물의 높이에 반비례되도록 유도하며, 시각적 개방감 부여 및 심리적 중압감 배제 등을 위해 주동의 최대길이는 80m 이내로 제한              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※ 주동길이라 함은 수직면에 수평투영한 길이 중 최대길이를 말함. “ㄱ, ㄴ”자 형태의 아파트 주동길이는 가장 거리가 먼 외벽 대각선의 길이를 말함</li> </ul> </li> <li>· 아파트의 지붕형태는 경사지붕 설치를 권장(구배는 3/10~7/10이 되도록 함)              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경사지붕이라 함은 건축물 지붕면적의 70%이상을 경사지붕으로 설치한 지붕을 말함</li> <li>- 경사지붕 설치시 옥상의 설비기기 등 경관불량요소는 건축물전면에서 보이지 않도록 설치</li> </ul> </li> </ul>
근린생활 용지	-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· 건축물의 외벽은 골조가 노출되어서는 아니되며 의장, 재료, 색채에 있어 3면이상의 벽면에서 통일성을 유지하여야 함</li> <li>· 옥상의 이용              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옥상부분의 옥외창고로의 이용 규제 및 물건을 그대로 방치하지 못하게 함</li> <li>- 부득이 옥상을 야적장으로 사용해야 할 경우에는 지상에서 보이지 않게 하고, 주변 고층 건물에서 보이지 않도록 간이지붕 설치</li> </ul> </li> <li>· 지하층으로 통하는 출입구와 계단은 건물내부에 설치하도록 권장</li> <li>· 근린생활시설의 1층 서터는 벽면의 50% 이상을 투시형으로 설치</li> <li>· 벽식 피로티 설치 기준안(신설)              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피로티 지상층 바닥은 도로면으로 부터 ±15cm 이내로 설치</li> <li>- 피로티 기둥의 폭은 1m 이내로 할 것</li> </ul> </li> <li>· 검암지구 쾌적한 주거환경을 위해 건축물 제한              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가설건축물(단, 공사용 가설건축물은 제외)</li> <li>- 가로경관을 저해하지 않도록 건축물의 구조는 조립식 경량판넬, 샌드위치판넬, 무피복철근 구조, 컨테이너 구조물을 제한함.</li> </ul> </li> </ul>
단독주택 용지 (C1, C2, C3)	-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· 지붕의 형태는 경사지붕 설치를 유도 (단, 다른형태의 지붕은 「인천광역시 서구 건축위원회」 심의를 거쳐 결정할 수 있다.)              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경사지붕이라함은 건축물 지붕면적의 70% 이상을 경사지붕으로 설치한 지붕을 말함</li> </ul> </li> <li>· 경사지붕의 설치시의 구배는 3/10~7/10이 되도록 함              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경사각을 갖는 외벽의 일부나 지붕의 방향은 주위건물과 일치시킴</li> </ul> </li> <li>· 옥상의 이용              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옥상부분의 옥외창고로의 이용 규제 및 물건을 그대로 방치하지 못하게 함</li> <li>- 부득이 옥상을 야적장으로 사용해야 할 경우에는 지상에서 보이지 않게 하고, 주변 고층 건물에서 보이지 않도록 간이지붕 설치</li> </ul> </li> <li>· 건축물의 외벽은 블록별로 유사한 재료 사용(외벽색상은 원색사용을 지양하여 우리동네라는 분위기 창출을 위한 공간형성)</li> <li>· 건축물의 외벽은 골조가 노출되어서는 아니되며 의장, 재료, 색채에 있어 3면 이상의 벽면에서 통일성을 유지하여야 함</li> <li>· 단독주택, 다세대주택, 연립주택은 지하층의 주거용도 이용을 금지토록하여 쾌적한 주거환경 유도</li> <li>· 벽식 피로티 설치 기준안(신설)              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피로티 지상층 바닥은 도로면으로 부터 ±15cm 이내로 설치</li> <li>- 피로티 기둥의 폭은 1m 이내로 할 것</li> </ul> </li> <li>· 단독주택용지 제1종근린생활시설 1층의 높이는 4.0m이하로 제한</li> <li>· 검암지구 쾌적한 주거환경을 위해 건축물 제한              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가설건축물(단, 공사용 가설건축물은 제외)</li> <li>- 가로경관을 저해하지 않도록 건축물의 구조는 조립식 경량판넬, 샌드위치판넬, 무피복철근 구조, 컨테이너 구조물을 제한함.</li> </ul> </li> </ul>

[별표 3]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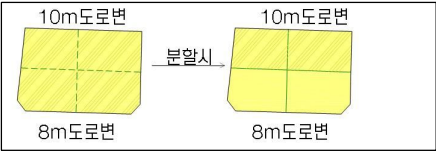
건축물 배치 분류표 (기정)

용도	도면 표시	건축물의 배치
공동주택용지	-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· 아파트의 전면길이는 일조 및 조망을 고려하여 조정배치하고, 변화있는 층수배치로 경관 및 식별성이 제고되도록 함</li> <li>· 주민의 프라이버시 침해나 밀폐감을 주지않는 범위내에서 주된 건물의 향과 직각 또는 변화있는 방향이 되도록 유도</li> <li>· 담장 설치 : 블록 외곽도로에 면한 단지 경계부에 단지의 관리와 안전을 위해 담장 설치              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블록 외곽도로에 면한 담장 : 투시형이나 생울타리 담장(높이 1.2m 이하) 설치를 권장</li> <li>- 공원 및 녹지시설에 면한 담장 : 생울타리담장(높이 1m이하) 설치</li> <li>- 동일 블록내 담장은 유사한 색상과 재료사용, 통일화된 형태로 블록별 일체감 부여</li> </ul> </li> <li>· 담장설치불허구간 : 보행으로 연결되는 교차지점(담장을 없애고 같은 동네로서의 공간형성)</li> <li>· 같은 단지내에 있는 모든 공동주택단지의 외곽도로에 면한 담장은 재료와 형태를 가급적 한가지로 통일도록 권장</li> </ul>
근린생활시설용지	-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· 위계가 높은 도로에 면하여 건축물 전면을 향하도록 함</li> <li>· 종로 2-169호선, 종로 2-184호선변에 접한 필지에 대하여 건축한계선 2m를 지정 건축물은 코아부분의 벽면 또는 개구부가 없는 벽면을 가로에 노출하여서는 안됨              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단, 벽면에 조경, 벽화등 장식처리를 하여 도시미관에 기여하는 경우는 예외로 함</li> </ul> </li> </ul>
단독주택용지	-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· 종로이상 도로변에 접한 획지에 대하여 건축한계선 2m 지정</li> <li>· 담장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높이 1.2m이하의 투시형담장 또는 1m이하의 생울타리 담장으로 설치</li> <li>· 폭 12m이상의 가로에 면한 건축물은 코아부분의 벽면 또는 개구부가 없는 벽면을 가로에 노출하여서는 안됨              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단, 벽면에 조경, 벽화등 장식처리를 하여 도시미관에 기여하는 경우에는 허가권자의 결정에 따르도록 함</li> </ul> </li> </ul>

[별표 3]

### 건축물 배치 분류표 (변경)

용도	도면 표시	건축물의 배치
공동주택용지	-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· 아파트의 전면길이는 일조 및 조망을 고려하여 조정배치하고, 변화있는 층수배치로 경관 및 식별성이 제고되도록 함</li> <li>· 주민의 프라이버시 침해나 밀폐감을 주지않는 범위내에서 주된 건물의 향과 직각 또는 변화있는 방향이 되도록 유도</li> <li>· 담장 설치 : 블록 외곽도로에 면한 단지 경계부에 단지의 관리와 안전을 위해 담장 설치              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블록 외곽도로에 면한 담장 : 투시형이나 생울타리 담장(높이 1.2m 이하) 설치를 권장</li> <li>- 공원 및 녹지시설에 면한 담장 : 생울타리담장(높이 1m이하) 설치</li> <li>- 동일 블록내 담장은 유사한 색상과 재료사용, 통일화된 형태로 블록별 일체감 부여</li> </ul> </li> <li>· 담장설치불허구간 : 보행으로 연결되는 교차지점(담장을 없애고 같은 동네로서의 공간형성)</li> <li>· 같은 단지내에 있는 모든 공동주택단지의 외곽도로에 면한 담장은 재료와 형태를 가급적 한가지로 통일토록 권장</li> </ul>
근린생활시설용지	-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· 위계가 높은 도로에 면하여 건축물 전면을 향하도록 함</li> <li>· 종로 2-169호선, 종로 2-184호선변에 접한 필지에 대하여 건축한계선 2m를 지정</li> <li>· 건축물은 코아부분의 벽면 또는 개구부가 없는 벽면을 가로에 노출하여서는 안됨              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단, 벽면에 조경, 벽화등 장식처리를 하여 도시미관에 기여하는 경우는 예외로 함</li> </ul> </li> </ul>
단독주택용지 (C1, C2, C3)	-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· 종로이상 도로변에 접한 획지에 대하여 건축한계선 2m 지정</li> <li>· 담장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높이 1.2m이하의 투시형담장 또는 1m이하의 생울타리담장의 설치</li> <li>· 폭 12m이상의 가로에 면한 건축물은 코아부분의 벽면 또는 개구부가 없는 벽면을 가로에 노출하여서는 안됨              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단, 벽면에 조경, 벽화등 장식처리를 하여 도시미관에 기여하는 경우에는 허가권자의 결정에 따르도록 함</li> </ul> </li> <li>· 획지분할에 관한 사항              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전면이 8m 도로에 접할 때 건축물용도 제한 C1적용</li> <li>- 전면이 10m도로에 접할 때 건축물용도 제한 C2적용</li> <li>- 전면이 12m도로에 접할 때 건축물용도 제한 C3적용</li> </ul> </li> <li>· 권장용도에 관한 사항              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도로 모퉁이변(도로폭원이 상이한 부분)에 접한 획지에 대한 기준은 도로폭원이 큰 것에 접하는 도로변의 용도를 허용</li> </ul> </li> </ul>



[별표 4]

건축물의 색채 분류표 (변경없음)

용도	도면 표시	건축물의 색채
공동주택	-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· 검암1구역 북측 및 서측은 Landmark 기능 및 단지내 쾌적한 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밝고 명량한 색조계열 사용</li> <li>· 인천시의 시색인 청색을 자연경관과의 조화를 고려하여 채도 및 명도를 낮추어 주조색으로 사용토록 권장</li> <li>· 주변은 안정된 주거환경 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침착한 색조계열 사용</li> </ul>
근린생활시설	-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· 주활동축으로서 밝고 명량한 색조계열을 사용하며 원색의 사용을 금함(단, 강조색은 가능)</li> <li>· 건축물의 전면색채는 동일용도의 인접건축물과는 동일계통의 색채를 사용하여 식별성 강화</li> </ul>
단독주택	-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· 원색의 사용을 금하며(강조색은 가능) 저채도 색채를 사용</li> <li>· 건축물의 좌우배면은 전면색채와 동일계통의 색채를 사용</li> <li>· 검정색 계통의 벽돌사용을 지양하여 밝고 명량한 분위기의 도시경관 형성</li> </ul>

■ 색채계획목표

- 색채계획은 도시경관에 영향을 주는 주요요소로서 주민들에게 심미감과 쾌적한 도시 환경을 느끼도록 하는 요소임
  - 주변지역과 조화를 이루는 도시경관의 형성을 위한 색채 사용
  - 인천시를 상징할 수 있는 색채감의 조성
  - 구역내의 변화로운 색채 형성으로 식별성 및 미관의 개선
  - 대상주민 뿐만아니라 도로를 통해 보여지는 가로경관의 시각효과 개선

■ 색채의 분류

- 자율적인 색채계획을 최대한 보장하되 색채사용의 범위를 명시하여 색채 적용의 융통성을 부여토록 함
- 색채의 분류는 주조색, 보조색, 강조색 등 3가지로 분류하며, 이들 색채의 적절한 사용을 통하여 다양하면서도 통일감 있는 도시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함
  - 주조색 : 대상지내 건축물의 도로변에 접하는 가장 잘보이는 면에 배색되어 시각적 인상을 결정하는 색으로서 외벽면적의 70%이상을 차지
  - 보조색 : 주조색보다는 좁은 면적에 배색되어 주조색과 조화를 이루면서 전체적으로 조화를 이루어 전체적인 변화를 주는 색으로서 외벽면적의 10~30%를 차지
  - 강조색 : 건축물의 선이나 점같이 매우 좁은 면의 특히 강조할 곳에 배색되어 주조색이나 보조색과 강한 대비를 이루면서 전체에 활력을 주고 변화를 주는 색이며 외벽면적의 10%미만을 차지

[별표 5]

차량동선.주차시설.단지내시설물에 관한 계획 (기정)

기 타 사 항

■ 차량동선 및 주차에 관한 계획

- 차량동선에 관한 계획
  - 간선 및 집산도로에서의 차량진출입을 가능한 배제하여 원활한 교통흐름 유도

① 차량출입불허구간

- 공동주택(아파트) 용지는 교차로 측단으로 부터 30m이내의 구간
- 근린생활시설용지는 교차로 측단으로 부터 10m이내 구간
- 버스정류장, 횡단보도, 육교 등에서 10m 이내 구간

② 공동주차통로

- 획지 2개소당 1개의 공동주차통로 설치를 유도하며 통로폭 최소 3 m이상 확보  
(단, 획지의 분할 및 합병시 차량출입불허구간을 피하여 적정위치 선정 가능)

◦ 주차에 관한 계획

- 공동주차장 설치 및 공동진출입 유도
- 법정규모 이상의 주차장을 확보하고, 주거용 건축물은 세대당 1대이상의 주차면수 확보 유도

■ 단지내 시설물 배치계획

- 기본방향
  - 보행활동 중 시설물을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어야 하며 사용중 위험 발생의 가능성을 최소화
  - 가로시설물의 형태, 크기, 배치, 구조 및 재료는 주위환경과 어울리도록 설치
  - 보행인이나 교통흐름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도록 계획하고, 특히 지체부자유자를 위한 편의 시설 설치
  - 대중 인식도가 높은 옥외시설물 또는 안내판 등의 시설물은 지역적 특성을 살린 디자인을 도입하여 설치

[별표 5]

차량동선.주차시설.단지내시설물에 관한 계획 (변경)

기 타 사 항

■ 차량동선 및 주차에 관한 계획

- 차량동선에 관한 계획
  - 간선 및 집산도로에서의 차량진출입을 가능한 배제하여 원활한 교통흐름 유도

① 차량출입불허구간

- 공동주택(아파트) 용지는 교차로 측단으로 부터 30m이내의 구간
- 근린생활시설용지는 교차로 측단으로 부터 10m이내 구간
- 버스정류장, 횡단보도, 육교 등에서 10m 이내 구간

② 공동주차통로

- 획지 2개소당 1개의 공동주차통로 설치를 권장하며 통로폭 최소 3 m이상 확보 (단, 획지의 분할 및 합병시 차량출입불허구간을 피하여 적정위치 선정 가능)

◦ 주차에 관한 계획

- 공동주차장 설치 및 공동진출입 유도
- 법정규모 이상의 주차장을 확보하고, 주거용 건축물은 세대당 1대이상의 주차면수 확보 유도

■ 단지내 시설물 배치계획

- 기본방향
  - 보행활동 중 시설물을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어야 하며 사용중 위험 발생의 가능성을 최소화
  - 가로시설물의 형태, 크기, 배치, 구조 및 재료는 주위환경과 어울리도록 설치
  - 보행인이나 교통흐름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도록 계획하고, 특히 지체부자유자를 위한 편의 시설 설치
  - 대중 인식이 높은 옥외시설물 또는 안내판 등의 시설물은 지역적 특성을 살린 디자인을 도입하여 설치

[별표 6]

도시계획도로에 관한 계획 (변경없음)

용도	도면 표시	도시계획도로	
도시 계획 도로		가로 시설 물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· 꼭 필요한 곳에만 적절한 수량으로 설치토록 유도</li> <li>· 상호보완적 가로시설물을 집합시켜 복합적 기능을 갖도록 설치</li> <li>· 시설간에 통일성 있고 시각적으로 아름답게 하여 가로를 장식할 수 있도록 설치</li> </ul>
		식 재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· 지역 특성 및 계절적인 특징을 나타내는 수종을 선택하여 지역별, 가로망별로 특징적 경관을 연출하도록 식재</li> <li>· 인천시의 시목인 목백합 또는 서구의 구목인 은행나무 등의 식재 유도</li> <li>· 가로수는 차도로부터 0.5m, 건물외벽으로부터 2~3m 이상 떨어져 식재하며, 식재간격은 6~8m를 기준으로 함</li> </ul>
		포 장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◦ 간선도로 및 이면도로</li> <li>· 변화가 적고 보수가 용이하며 차량의 하중에 견딜 수 있는 내구성 재료의 사용</li> <li>· 재료는 아스팔트 및 유색아스팔트 사용</li> <li>◦ 보도</li> <li>· 보행의 지루함을 해소할 수 있는 다양한 패턴</li> <li>· 포장구획을 소단위로하여 친근감 유지</li> <li>· 재료는 소형고압블럭 및 일반콘크리트블럭 등의 재료 사용 유도</li> <li>◦ 연석</li> <li>· 횡단로 등에서는 경사면으로 처리</li> <li>· 재료는 화강석(인조화강석)등 차량에 의해 파손되지 않는 재료 사용</li> </ul>
		조 명 시 설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◦ 가로등</li> <li>· 도로의 교통량, 도로폭, 바닥포장의 재질, 건축물의 재질(반사정도) 등을 고려하여 높이, 위치, 밝기 등을 조절</li> <li>· 조명등의 설치타입은 주변여건에 적합되도록 선택</li> <li>◦ 보행등</li> <li>· 연속적으로 일정한 조도를 유지하도록 하며, 가급적 보도폭 전체로 빛이 닿도록 계획</li> </ul>
		기 타 사 항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· 육교, 계단, 경사로의 설치 및 조명시설, 옥외가로시설물 등 본 계획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관련법의 기준을 준용토록 함(장애인·노인·임산부 등의 편의 증진보장에 관한 법률, 도로구조령의 도로조명 시설기준, 옥외광고물 관리법, 인천시 C·I·P 기준 등)</li> </ul>

**[별표 7]**

**옥외광고물 설치기준 (변경없음)**

- 옥외가로시설물의 형태 및 색채 등 본 계획에서 정하지 않은 부분에 대하여는 인천시 도시개성창조사업(C.I.P) 운용관리지침의 기준을 준용토록 함
  - 가로시설물, 안내판, 옥외광고물, 표지판 등의 도시개성과 관련한 일체화된 디자인 계획

**[별표 8]**

**기 타 사 항 (변경없음)**

- 환경영향평가, 교통영향평가, 에너지사용계획 등 과업추진 과정에서 협의 완료, 승인된 내용 중 본 계획과 관련된 사항은 수용하여야 하며, 본 계획에 별도로 언급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기존의 법규나 인천광역시 조례 및 서구 관련조례를 준용함
- 본 지구단위계획의 일부 규제내용이 기존의 법, 시행령, 시행규칙 등 관련법령의 내용과 서로 다를 경우에는 이들 중 그 규제내용이 강화된 것을 준용함

**II. 지구단위계획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(변경) 조서**

1. 검암2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(변경) 조서

가.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(변경) 조서 : 변경없음

구분	구역명	위 치	면 적 (㎡)			비고
			기 정	변 경	변경후	
-	검암2구역	서구 검암동 506-1번지 일원	408,826.0	-	408,826.0	

나. 용도지역·지구의 결정(변경) 조서 : 변경없음

■ 주거지역 변경 조서

구 분	면 적 (㎡)			구성비 (%)	비고
	기 정	변 경	변경후		
계	408,826.0	-	408,826.0	100.0	
주 거 지 역	제1종일반주거지역	210,719.0	-	210,719.0	51.5
	제2종일반주거지역	66,286.0	-	66,286.0	16.2
	제3종일반주거지역	131,821.0	-	131,821.0	32.3

■ 용도지구(고도지구) 변경 조서

구분	도면 표시 번호	지구명	지구의 세 분	위 치	고도 제한 내용	면 적(㎡)			최초 결정일	비고
						기 정	변경	변경후		
-	1	고도 지구	최고 고도 지구	검암동 519-1번지 일원	5층 이하	154,282.0	-	154,282.0	인고2000-113 (2000.6.30)	

다. 도시기반시설 배치와 규모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 조서 : 변경

1) 도 로 : 변경없음

■ 도로 총괄표

구 분	합 계		1 류		2 류		3 류		
	연장(m)	노선수	연장(m)	노선수	연장(m)	노선수	연장(m)	노선수	
합 계	9,699	49	1,368	12	5,344	28	2,987	9	
일 반 도 로	대로	-	-	-	-	-	-	-	
	중로	1,533	5	-	-	1,059	3	474	2
	소로	7,864	38	1,261	10	4,260	24	2,343	4
보행자전용도로	302	6	107	2	25	1	170	3	

■ 도로 결정(변경) 조서

구분	규 모				기 능	연 장 (m)	기 점	종 점	사 용 형 태	주 요 경과지	최 초 결 정 일	비 고
	등급	류별	번호	폭원 (m)								
기정	중로	2	169	18~25	보조 간선	783 (2,330)	대로 1-19 (검암동산19)	검암동71-3 북측지구계	일반 도로	-	인고93-130 ('93.9.28)	
기정	중로	2	171	15	국지 도로	157	중로 2-169	소로 3-23	일반 도로	-	인고2000-113 (2000.6.30)	
기정	중로	2	172	15	국지 도로	119	중로 2-169	소로 1-26	일반 도로	-	인고93-130 ('93.9.28)	
기정	중로	3	145	12	국지 도로	200	중로2-169	소로 2-79	일반 도로	-	인고93-130 ('93.9.28)	
기정	중로	3	146	12	국지 도로	274	중로2-172	소로 3-23	일반 도로	-	인고2000-113 (2000.6.30)	
기정	소로	1	6	10	국지 도로	424	소로 1-25	중로 3-146	일반 도로	-	인고93-130 ('93.9.28)	
기정	소로	1	7	10~16	국지 도로	123	중로2-169	소로1-6	일반 도로	-	인고93-130 ('93.9.28)	
기정	소로	1	9	10~16	국지 도로	194	중로 2-169	소로 2-79	일반 도로	-	인고93-130 ('93.9.28)	
기정	소로	1	10	10	국지 도로	98	소로 1-9	중로 3-145	일반 도로	-	인고93-130 ('93.9.28)	
기정	소로	1	21	10	국지 도로	36	중로2-169	소로2-68	일반 도로	-	인고93-130 ('93.9.28)	
기정	소로	1	22	10	국지 도로	34	중로2-169	소로2-86	일반 도로	-	인고93-130 ('93.9.28)	
기정	소로	1	23	10	국지 도로	36	중로2-169	소로2-72	일반 도로	-	인고93-130 ('93.9.28)	
기정	소로	1	24	10	국지 도로	34	중로2-169	소로2-86	일반 도로	-	인고93-130 ('93.9.28)	

구분	규 모				기 능	연 장 (m)	기 점	종 점	사 용 형 태	주 요 경과지	최초 결정일	비고
	등급	류별	번호	폭원 (m)								
기정	소로	2	69	8	국지도로	78	소로2-110	소로2-68	일반도로	-	인고93-130 (`93.9.28)	
기정	소로	2	70	8	국지도로	98	소로2-69	소로3-17	일반도로	-	인고93-130 (`93.9.28)	
기정	소로	2	71	8	국지도로	73	소로2-70	소로2-68	일반도로	-	인고93-130 (`93.9.28)	
기정	소로	2	72	8	국지도로	592	소로2-68	소로3-17	일반도로	-	인고93-130 (`93.9.28)	
기정	소로	2	69	8	국지도로	78	소로2-110	소로2-68	일반도로	-	인고93-130 (`93.9.28)	
기정	소로	2	70	8	국지도로	98	소로2-69	소로3-17	일반도로	-	인고93-130 (`93.9.28)	
기정	소로	2	71	8	국지도로	73	소로2-70	소로2-68	일반도로	-	인고93-130 (`93.9.28)	
기정	소로	2	72	8	국지도로	592	소로2-68	소로3-17	일반도로	-	인고93-130 (`93.9.28)	
기정	소로	2	73	8	국지도로	190	소로2-72	소로3-17	일반도로	-	인고93-130 (`93.9.28)	
기정	소로	2	74	8	국지도로	91	소로1-9	소로2-73	일반도로	-	인고93-130 (`93.9.28)	
기정	소로	2	75	8	국지도로	98	소로2-72	소로2-74	일반도로	-	인고93-130 (`93.9.28)	
기정	소로	2	79	8	국지도로	100	소로 1-9	중로 3-145	일반도로	-	인고93-130 (`93.9.28)	
기정	소로	2	82	8	국지도로	98	소로1-10	소로2-72	일반도로	-	인고93-130 (`93.9.28)	
기정	소로	2	83	8~12	국지도로	138	중로 2-169	중로 3-145	일반도로	-	인고93-130 (`93.9.28)	
기정	소로	2	84	8	국지도로	117	소로2-82	소로2-83	일반도로	-	인고93-130 (`93.9.28)	
기정	소로	2	86	8	국지도로	752	소로 1-6	중로 2-171	일반도로	-	인고93-130 (`93.9.28)	
기정	소로	2	94	8	국지도로	113	소로 2-96	소로 1-27	일반도로	-	인고93-130 (`93.9.28)	
기정	소로	2	96	8	국지도로	115	소로 1-27	소로 3-23	일반도로	-	인고93-130 (`93.9.28)	
기정	소로	2	98	8	국지도로	124	소로2-86	소로3-18	일반도로	-	인고93-130 (`93.9.28)	
기정	소로	2	99	8	국지도로	407	소로1-6	소로1-6	일반도로	-	인고93-130 (`93.9.28)	
기정	소로	2	100	8	국지도로	42	소로2-86	소로2-99	일반도로	-	인고93-130 (`93.9.28)	
기정	소로	2	101	8	국지도로	36	소로2-99	소로3-18	일반도로	-	인고93-130 (`93.9.28)	
기정	소로	2	102	8	국지도로	500	소로3-18	소로2-102	일반도로	-	인고93-130 (`93.9.28)	
기정	소로	2	103	8	국지도로	40	소로2-86	소로2-102	일반도로	-	인고93-130 (`93.9.28)	
기정	소로	2	104	8	국지도로	36	소로2-102	소로3-18	일반도로	-	인고93-130 (`93.9.28)	

구분	규 모				기 능	연 장 (m)	기 점	종 점	사 용 태	주 경 과 지	최 초 결 정 일	비 고
	등 급	류 별	번 호	폭 원 (m)								
기정	소로	2	105	8	국지도로	82	소로1-6	소로3-18	일반도로	-	인고93-130 ('93.9.28)	
기정	소로	2	106	8	국지도로	136	소로1-6	소로3-18	일반도로	-	인고93-130 ('93.9.28)	
기정	소로	2	110	8	특수도로	25	대로1-19	소로2-69	보행자 전용	-	인고93-130 ('93.9.28)	
기정	소로	3	17	6	국지도로	626	중로2-169	소로3-21	일반도로	-	인고93-130 ('93.9.28)	
기정	소로	3	18	6	국지도로	608	소로1-27	소로3-22	일반도로	-	인고93-130 ('93.9.28)	
기정	소로	3	19	6	특수도로	110	소로2-68	소로2-73	보행자 전용	-	인고93-130 ('93.9.28)	
기정	소로	3	20	6	특수도로	34	중로2-169	소로2-86	보행자 전용	-	인고93-130 ('93.9.28)	
기정	소로	3	21	6	특수도로	26	대로1-19	소로3-17	보행자 전용	-	인고93-130 ('93.9.28)	
기정	소로	3	22	6	국지도로	56	대로1-19	소로3-18	일반도로	-	인고93-130 ('93.9.28)	
기정	소로	3	23	6	국지도로	1,053	중로1-169	소로1-27	일반도로	-	인고93-130 ('93.9.28)	

2) 주 차 장 : 변경없음

■ 주차장 결정(변경) 조서

구분	도면 표시 번호	시설명	시설의 세분	위 치	면 적(㎡)			최 초 결 정 일	비 고
					기 정	변 경	변경후		
기정	3	검암3주차장	노외 주차장	검암동 503-8	1,400.4	-	1,400.4	인고93-130 ('93.9.28)	
기정	4	검암4주차장	노외 주차장	검암동 515-1	1,760.2	-	1,760.2	인고93-130 ('93.9.28)	
	계		2개소		3,160.6	-	3,160.6		

3) 공 원 : 변경

■ 공원 결정(변경) 조서

구분	도면 표시 번호	시설명		시설의 세 분	위 치	면 적(㎡)			최초 결정일	비고
		기정	변경			기 정	변 경	변경후		
변경	1	검암1근린공원	검여근린공원	근린공원	검암동 496	12,475.2	-	12,475.2	인고93-130 ('93.9.28)	
변경	8	검암8어린이 공원	삼지어린이공원	어린이 공원	검암동 504-1	2,070.3	-	2,070.3	인고93-130 ('93.9.28)	
변경	9	검암9어린이 공원	허암어린이공원	어린이 공원	검암동 534-3	2,977.8	-	2,977.8	인고93-130 ('93.9.28)	
기정	10	검암근린공원	검암근린공원	근린공원	검암동 533	743.6 (296,396)	-	743.6 (296,396)	건고66-2701 ('66.8.31)	( )는 전체면적
	계			4개소		18,266.9	-	18,266.9		

■ 공원 결정(변경) 사유서

도면 표시 번호	시 설 명	변 경 내 용	변 경 사 유
1	검여 근린공원	공원 시설명 변경	◦ 지역의 유래 및 지명을 고려하여 공원명 변경
8	삼지 어린이공원	공원 시설명 변경	◦ 지역의 유래 및 지명을 고려하여 공원명 변경
9	허암 어린이공원	공원 시설명 변경	◦ 지역의 유래 및 지명을 고려하여 공원명 변경

4) 녹 지 : 변경없음

■ 녹지 결정(변경) 조서

구분	도면 표시 번호	시 설 명	시설의 세 분	위 치	면 적(㎡)			최초 결정일	비고
					기 정	변 경	변경후		
기정	2	검암2녹지	완충녹지	검암동 492-3	540.7	-	540.7	인고93-130 ('93.9.28)	
기정	3	검암3녹지	완충녹지	검암동 525-4, 525-9	647.4	-	647.4	인고93-130 ('93.9.28)	
기정	4	검암4녹지	완충녹지	검암동 524-1	3,223.3	-	3,223.3	인고93-130 ('93.9.28)	
	계		3개소		4,411.4	-	4,411.4		

5) 학 교 : 변경없음

■ 학교 결정(변경) 조서

구분	도면 표시 번호	시설명	시설의 세 분	위 치	면 적(㎡)			최초 결정일	비고
					기 정	변 경	변경후		
기정	5	초등학교	초등학교	검암동 495	10,395.3	-	10,395.3	인고93-130 ('93.9.28)	
기정	6	중 학교	중 학교	검암동 497	10,535.0	-	10,535.0	인고93-130 ('93.9.28)	
기정	7	초등학교	초등학교	검암동 536-1	11,791.0	-	11,791.0	인고93-130 ('93.9.28)	
	계		3개소		32,721.3	-	32,721.3		

6) 공 공 청 사 : 변경없음

■ 공공청사 결정(변경) 조서

구분	도면 표시 번호	시설명	시설의 세 분	위 치	면 적(㎡)			최초 결정일	비고
					기 정	변 경	변경후		
기정	6	파출소	공공청사	검암동 514-7	649.5	-	649.5	인고93-130 ('93.9.28)	
	계		1개소		649.5	-	649.5		

라.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조성에 관한 도시계획결정(변경)조서

1) 공동주택용지

■ 공동주택용지(A용도)의 가구 및 획지 결정조서 : 변경없음

가구 번호	기 정			
	가구면적 (㎡)	획 지		분할가능 획 지 수
		위 치	면 적(㎡)	
11	31,852.7	1	26,010.8	공동건축
		2	5,841.9	
30	32,089.3	1	15,740.7	
		2	16,348.6	
31	15,740.8	1	15,740.8	
37	31,485.8	1	15,743.1	
		2	15,742.7	

2) 근린생활시설용지

○ 필지규모 600㎡이상에 대하여 대지분할가능선수 지정.

(단, 대지분할가능선을 조정하여 분할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1필지의 최소규모가 300㎡이상일 경우에만 가능)

■ 근린생활시설용지(B용도)의 가구 및 획지 결정(변경) 조서 : 변경없음

가구 번호	기 정			
	가구면적 (㎡)	획 지		분할가능 획 지 수
		위치	면적(㎡)	
7	5,617.1	1	1,633.6	4
		2-1	1,322.9	2
		2-2	697.6	-
		3	842.8	2
		4	545.6	-
		5	574.6	-

가구 번호	기			정
	가구면적 (㎡)	획 지		분할가능 획 지 수
		위치	면 적(㎡)	
25	4,389.9	1	350.5	-
		2	500.1	-
		3	2,921.7	6
		4	251.7	-
		5	365.9	-
26	3,705.7	1-1	2,661.7	5
		1-2	1,044.0	-
27	2,415.9	1	1,044.0	2
		2	1,371.9	3
28	2,375.0	1	494.9	-
		2-1	194.4	공동건축
		2-2	196.0	
		2-3	220.5	-
		2-4	221.2	-
		2-5	220.8	-
		3	209.1	-
		4	618.1	-
57	3,338.7	1	1,071.9	3
		2	274.8	-
		3	359.8	-
		4	424.4	-
		5	504.7	-
		6	703.1	-
58	2,983.7	1	313.2	공동건축
		2	113.7	
		3-1	220.8	-
		3-2	205.1	-
		3-3	447.2	-
		4	552.2	-
		5	580.8	-
		6	550.7	-
59	3,729.7	1	1,494.5	2
		2	724.6	-
		3	768.6	2
		4	345.3	-
		5	396.7	-
60	3,270.8	1	1,447.0	2
		2	653.0	-
		3	357.1	-
		4	257.2	-
		5	556.5	-

가구 번호	기			정
	가구면적 (㎡)	획 지		분할가능 획 지 수
		위치	면 적(㎡)	
61	3,051.7	1	448.0	공동건축
		2	189.6	-
		3	144.1	공동건축
		4	239.4	-
		5	477.3	-
		6	250.1	-
		7	662.2	-
		8	641.0	-
68	3,738.0	1	121.9	-
		2	598.9	공동건축
		3	195.5	
		4	173.8	-
		5-1	556.6	-
		5-2	371.2	-
		5-3	348.6	-
		6	199.3	-
		7	527.6	-
		8	339.4	-
		9	305.2	-
69	614.4	4	614.4	-

3) 단독주택용지

○ 필지규모 400㎡이상에 대하여 대지분할가능선수 지정.

(단, 대지분할가능선을 조정하여 분할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1필지의 최소규모가 200㎡이상일 경우에만 가능)

■ 단독주택용지(C용도)의 가구 및 획지 결정(변경) 조서 : 변경없음

가구 번호	기 정			
	가구면적 (㎡)	획 지		분할가능 획 지 수
		위치	면 적(㎡)	
1	2,050.4	1	633.8	2
		2	1,416.6	4
2	3,158.4	1	289.7	-
		2	117.7	-
		3	196.3	-
		4	1,864.1	6
		5	428.1	2
		6	262.0	-
3	2,861.6	1	263.6	-
		2	294.5	-
		3	1,350.4	4
		4-1	345.6	-
		4-2	607.5	2
8	3,194.5	1-1	304.2	-
		1-2	300.0	-
		2	914.5	3
		3-1	265.3	-
		3-2	314.3	-
		3-3	403.2	2
		3-4	242.2	-
		3-5	354.1	-
		4	96.7	-

가구 번호	기			정
	가구면적 (㎡)	획 지		분할가능 획 지 수
		위치	면 적(㎡)	
9	3,330.9	1	594.0	2
		2	211.9	-
		3	186.6	-
		4	191.6	-
		5	267.1	-
		6	267.5	-
		7	152.6	-
		8	843.3	4
		9	123.8	-
		11	270.3	-
		10	90.5	-
		12	131.7	-
10	1,754.2	1	326.5	-
		2	151.2	-
		3	193.3	-
		4	174.9	-
		5	174.9	-
		6	320.8	-
		7	412.6	2
18	2,816.5	1	797.8	3
		2	1,088.8	5
		3	223.7	-
		4	353.2	-
		5-1	176.7	-
		5-2	176.3	-
19	3,188.4	2	898.3	2
		3	273.5	-
		4	443.2	2
		5	814.9	3
		6	758.5	2
		20	4,985.7	1
2	552.8			2
4	195.0			-
5	659.3			2
6	568.7			2
7	589.7			2
8	241.3			-
9	363.0			-
10	398.9			-
11	452.5			2
21	3,737.8			1
		2	565.3	2
		3	404.7	-
		4	807.5	-

가구 번호	기			정
	가구면적 (㎡)	획 지		분할가능 획 지 수
		위치	면 적(㎡)	
43	2,576.5	2	2,576.5	8
45	1,999.7	2	269.8	-
		3	1,158.4	5
		4	295.6	-
		5	275.9	-
46	5,522.2	1	723.1	3
		2	1,645.0	6
		3	263.2	-
		4	1,282.4	4
		5	1,608.5	6
47	2,995.8	1	438.1	2
		2	440.5	2
		3	434.6	2
		4	505.5	2
		5	646.3	2
		6	530.8	2
49	2,288.6	1	1,794.4	4
		2	494.2	2
51	4,478.8	1	266.0	-
		2	212.0	-
		3	452.9	2
		4	854.6	4
		5	295.6	-
		6	158.1	-
		7	102.3	-
		8	103.3	-
		9-1	291.7	-
		9-2	333.5	-
		9-3	196.5	-
		9-4	202.8	-
		9-5	214.0	-
		10	795.5	3
52	4,696.6	1	1,005.1	4
		2	206.9	-
		3	179.9	-
		4	92.5	-
		5	456.8	-
		6	804.1	3
		7	507.2	2
		8	200.6	-
		9	442.9	2
		10-1	248.5	-
		10-2	248.1	-
		10-3	304.0	-

가구 번호	기			정
	가구면적 (㎡)	획 지		분할가능 획 지 수
		위치	면 적(㎡)	
53	4,410.8	1	387.6	-
		2	317.6	-
		3	577.3	2
		4	243.3	-
		5	236.0	-
		6	658.1	2
		7	313.4	-
		8	543.9	2
		9	386.0	-
		10	385.9	-
		11	361.7	-
54	4,122.2	1	622.3	2
		2	117.6	-
		3	321.9	-
		4	580.5	2
		5	502.7	2
		6-1	233.0	-
		6-2	233.3	-
		7	344.5	-
8	1,166.4	5		
55	4,974.6	1	1,193.1	3
		2	751.9	2
		3	171.0	-
		4	297.3	-
		5	251.2	-
		6	515.1	2
		7	246.9	-
		8	312.4	-
		9	140.3	-
		10	192.7	-
		11	407.6	2
		12	495.1	2
56	4,518.4	1	845.5	4
		2	140.9	-
		3	401.2	2
		4	265.8	-
		5	323.6	-
		6	203.8	-
		7	488.5	2
		8	220.2	-
		9	96.0	-
		10	166.1	-
		11	694.3	3
		12	457.9	2
		13	214.6	-

가구 번호	기			정
	가구면적 (㎡)	획 지		분할가능 획 지 수
		위치	면 적(㎡)	
62	4,958.1	1	385.5	-
		2	364.0	-
		3-1	594.9	2
		3-2	1,169.7	3
		4	539.3	2
		5	618.3	2
		6	288.5	-
		7	997.9	4
63	3,741.5	1	1,218.5	6
		2	783.0	2
		3	198.2	-
		4	490.7	2
		5	404.9	2
		6	646.2	3
64	4,219.0	1	623.9	2
		2-1	250.5	-
		2-2	250.9	-
		2-3	251.0	-
		2-4	251.0	-
		3	248.7	-
		4	147.6	-
		5	802.4	3
		6	147.5	-
		7-1	369.8	-
		7-2	363.7	-
		8	512.0	2
65	4,997.5	1	1,034.5	4
		2	774.2	2
		3	149.7	-
		4	460.5	2
		5	542.5	2
		6	978.4	4
		7	215.7	-
		8	310.7	-
		9	531.3	2

가구번호	기			정
	가구면적 (㎡)	획 지		분할가능 획 지 수
		위치	면 적(㎡)	
66	5,293.5	1	1,027.9	4
		2-1	238.1	-
		2-2	238.0	-
		2-3	237.3	-
		2-4	237.2	-
		2-5	237.1	-
		3	964.7	4
		5	176.0	-
		6	310.8	-
		7	143.8	-
		8	387.1	-
		9	298.6	-
		10	796.9	3
67	6,150.9	1	334.8	-
		2	384.1	-
		3	260.6	-
			238.1	-
			238.2	-
			238.2	-
		5	433.8	2
		6	138.9	-
		7	198.2	-
		8	352.3	-
		9	449.1	2
		10	721.5	3
		11	581.6	-
12	186.1	-		
13	1,395.4	6		
69	1,940.6	1	229.7	-
		2	335.1	-
		3	754.9	3
		5	214.7	-
		6	143.6	-
		7	262.6	-
		70	2,953.2	1
	2	335.8	-	
	3	671.7	2	
	4	679.5	3	
	5	340.1	-	

마. 건축물에 대한 용도·건폐율·용적률·높이·배치·형태·색채·건축선에 관한 도시계획결정(변경) 조서

1) 공동주택용지

■ 공동주택용지(A용도) 결정 조서 : 변경없음

도면번호	위 치 (가구번호)	구 분	계 획 내 용		
			기 정	변 경	
11,30,31,37	11,30,31,37 (공동주택지 A용도)	용도	허용용도	· 별표1의 A 지정 및 권장용도	· 변경없음
			불허용도	· 별표1의 A 불허용도	
		건 폐 율	· 20%이하	· 변경없음	
		용 적 률	· 250%이하	· 변경없음	
		높 이	· 19층이하	· 변경없음	
		형 태	· 별표2의 A	· 변경없음	
		배 치	· 별표3의 A	· 변경없음	
		색 채	· 별표4의 A	· 변경없음	
		건 축 선	· 별표3의 A	· 변경없음	

2) 근린생활시설용지

■ 근린생활시설용지(B용도) 결정 조서 : 변경없음

도면번호	위 치 (가구번호)	구 분	계 획 내 용		
			기 정	변 경	
7,25,26,27,28,57, 58,59,60,61,68 (1~9),69(4)	7,25,26,27,28,57, 58,59,60,61,68 (1~9),69(4) (근린생활시설용 지B용도)	용도	허용용도	· 별표1의 B 지정 및 권장용도	· 변경없음
			불허용도	· 별표1의 B 불허용도	
		건 폐 율	· 50%이하	· 변경없음	
		용 적 률	· 200%이하	· 변경없음	
		높 이	· 4층이하 (지상1층 전부를 피로 티구조로 하여 주차장 으로 사용하는 경우에 층수산정에 제외한다. 단, 건축물의 용도전체 가 연립주택, 다세대 주택, 다가구주택에 한함)	· 변경없음	
		형 태	· 별표2의 B	· 변경없음	
		배 치	· 별표3의 B	· 변경없음	
		색 채	· 별표4의 B	· 변경없음	
건 축 선	· 별표3의 B	· 변경없음			

3) 단독주택용지

■ 단독주택용지(C1용도) 결정 조서 : 변경(8m도로에 접하는 획지에 한함)

도면번호	위 치	구 분	계 획 내 용		
			기 정(C)	변 경(C1)	
1(1~2),2(1~6),3(1~3,4-1~2),8(1-1~2,2,3-1~5,4),9(1,8~12),10(2~4),19(4~6),20(1~2,4~11),21(3~4),43(2),45(3~5),46(1~5),47(2~5),51(1~8,9-1~5),52(2~9,10-1~3),53(7~11),54(2~3,6-1~2,7),55(2~9),56(1~10,12~13),62(1~2,3-1~2,6),63(2~6),64(1,2-1~4,3~6,7-1~2,8),65(6~9),66(2-1~2,3,5~6),67(1~3,4-1~3,5~12),69(1,2~3,5~7),70(2~5)	1(1~2),2(1~6),3(1~3,4-1~2),8(1-1~2,2,3-1~5,4),9(1,8~12),10(2~4),19(4~6),20(1~2,4~11),21(3~4),43(2),45(3~5),46(1~5),47(2~5),51(1~8,9-1~5),52(2~9,10-1~3),53(7~11),54(2~3,6-1~2,7),55(2~9),56(1~10,12~13),62(1~2,3-1~2,6),63(2~6),64(1,2-1~4,3~6,7-1~2,8),65(6~9),66(2-1~2,3,5~6),67(1~3,4-1~3,5~12),69(1,2~3,5~7),70(2~5) 단독주택용지 C1	용도	허용 용도	· 별표1의 C 지정 및 권 장용도	· 별표1의 C1 지정 및 권장용도
			권장 용도	· 별표1의 C 불허용도	· 별표1의 C1 불허용도
		건 폐 율	· 50%이하	· 변경없음	
		용 적 륜	· 150%이하	· 변경없음	
		높 이	· 3층이하	· 변경없음	
		형 태	· 별표2의 C	· 별표2의 C1	
		배 치	· 별표3의 C	· 별표3의 C1	
		색 채	· 별표4의 C	· 변경없음	
건 축 선	-	-			

■ 단독주택용지(C2용도) 결정 조서 : 변경(10m도로에 접하는 획지에 한함)

도면번호	위 치	구 분	계 획 내 용		
			기 정(C)	변 경(C2)	
9(2~8),10(1,5~7),18(1~4,5-1~2), 43(2),49(1~2),45 (2),47(1,6),51(10),52(1) ,53(1~6),54(1,4~5,8),5 5(1,10~12),56(11),62(4 ~5,7),63(1),65(1~6),66 (1,2-3~5,7~10),67(13), 70(1)	9(2~8),10(1,5~7),18(1~4,5-1~2), 43(2),49(1~2),45 (2),47(1,6),51(10),52(1) ,53(1~6),54(1,4~5,8),5 5(1,10~12),56(11),62(4 ~5,7),63(1),65(1~6),66 (1,2-3~5,7~10),67(13), 70(1)  단독주택용지 C2	용도	권장 용도	· 별표1의 C 지정 및 권장용도	· 별표1의 C2 지정 및 권장용도
			불허 용도	· 별표1의 C 불허 용도	· 별표1의 C2 불허용도
		건 폐 율	· 50%이하	· 변경없음	
		용 적 륜	· 150%이하	· 변경없음	
		높 이	· 3층이하	· 변경없음	
		형 태	· 별표2의 C	· 별표2의 C2	
		배 치	· 별표3의 C	· 별표3의 C2	
		색 채	· 별표4의 C	· 변경없음	
		건 축 선	-	-	

■ 단독주택용지(C3용도) 결정 조서 : 변경(12m도로에 접하는 획지에 한함)

도면번호	위 치	구 분	계 획 내 용		
			기 정(C)	변 경(C3)	
19(2~3),21(1~2), 43(2)	19(2~3),21(1~2), 43(2)  단독주택용지 C3	용도	권장용도	· 별표1의 C 지정 및 권장용도	· 별표1의 C3 지정 및 권장용도
			불허용도	· 별표1의 C 불허용도	· 별표1의 C3 불허용도
		건 폐 율	· 50%이하	· 변경없음	
		용 적 륜	· 150%이하	· 변경없음	
		높 이	· 3층이하	· 변경없음	
		형 태	· 별표2의 C	· 별표2의 C3	
		배 치	· 별표3의 C	· 별표3의 C3	
		색 채	· 별표4의 C	· 변경없음	
건 축 선	-	-			

4) 교육시설용지

- 교육시설용지(D용도) 결정 조서 : 변경없음

도면번호	위 치 (가구번호)	구 분	계 획 내 용	
			기 정	변 경
4,6,45(1)	4,6,45(1) (교육시설용지D 용도)	용 도	· 학교	· 변경없음
		건 폐 율	· 30%이하	· 변경없음
		용 적 률	· 150%이하	· 변경없음
		높 이	· 5층이하	· 변경없음
		형 태	-	· 변경없음
		배 치	-	· 변경없음
		색 채	-	· 변경없음
		건 축 선	-	· 변경없음

5) 공공청사용지

- 공공청사용지(E용도) 결정 조서 : 변경없음

도면번호	위 치 (가구번호)	구 분	계 획 내 용	
			기 정	변 경
57(7)	57(7) (공공청사용지E용도)	용 도	· 공공청사	· 변경없음
		건 폐 율	· 50%이하	· 변경없음
		용 적 률	· 200%이하	· 변경없음
		높 이	· 4층이하	· 변경없음
		형 태	-	· 변경없음
		배 치	-	· 변경없음
		색 채	-	· 변경없음
		건 축 선	-	· 변경없음

6) 주차장용지

- 주차장용지(F용도) 결정 조서 : 변경없음

도면번호	위 치 (가구번호)	구 분	계 획 내 용	
			기 정	변 경
10(8),43(1)	10(8),43(1) (주차장용지F용도)	용 도	· 주차장	· 변경없음
		건 폐 율	-	-
		용 적 륜	-	-
		높 이	· 지평식	· 변경없음
		형 태	-	-
		배 치	-	-
		색 채	-	-
		건 축 선	· 별표3의 C	· 변경없음

바. 기타사항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

- [별표 1]** : 건축물 용도 분류표 : 변경
- [별표 2]** : 건축물 형태 분류표 : 변경
- [별표 3]** : 건축물 배치 분류표 : 변경
- [별표 4]** : 건축물의 색채 분류표 : 변경없음
- [별표 5]** : 차량동선·주차시설·단지내 시설물에 관한 계획 : 변경
- [별표 6]** : 도시계획도로에 관한 계획 : 변경없음
- [별표 7]** : 옥외광고물 설치기준 : 변경없음
- [별표 8]** : 기타사항 : 변경없음

[별표 1]

건축물 용도 분류표 (기정)

구분	A	B	C	D	E	F
지정용도	·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- 공동주택 중 아파트	-	-	· 학교	· 공공청사	· 주차장
권장용도	-	· 건축법시행령에 의한 - 단독주택 - 공동주택 (아파트 제외) - 제1종 근린생활시설 - 제2종 근린생활시설 (단, 안마사술소, 단란주점, 골프연습장 제외) - 문화 및 집회시설 중 종교 집회장 (타종 및 확장장치 없는 것에 한함) -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 중 아동관련시설, 노인 복지시설, 사회복지시설 및 근로복지시설 -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중 석유 및 액화가스 판매소 - 자동차 관련시설 중 주차장, 세차장	· 건축법시행령에 의한 - 단독주택 (단, 다가구주택은 1가구당 1대의 주차면수 확보시에 한함) - 공동주택 (아파트 제외. 단, 연립주택 및 다세대주택은 1세대당 1대의 주차면수 확보시에 한함) - 제1종근린생활시설 (단, 1층에 한함)	-	-	
불허용도	· 지정용도, 권장용도 이외의 용도 · 지하층 주거용도 · 학교보건법 제5조 규정에 의한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에 해당되는 지역에서 학교보건법 제6조에 해당되는 용도					

주1) 단독주택지(C)의 경우 경사지붕내에 설치하는 다락의 층고를 1.5m초과 1.8m 이하로 설치시 건축물의 높이는 다락층을 포함하여 4층이하, 용적율 180% 이하로 완화

주2) 대지분할가능선 획지의 공동주차 통로는 미분할시 차량출입불허구간을 피하여 적정 위치 선정 가능

[별표 1]

건축물 용도 분류표(변경)

구분	A	B	C1	C2	C3	D ~ F
지정용도	·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-공동주택 중 아파트	-	-	-	-	· 변경없음
권장용도	-	· 건축법시행령에 의한 -단독주택 -공동주택 (아파트 제외) -제1종 근린생활시설 -제2종 근린생활시설 (단, 안마사술소, 단란주점, 골프연습장 제외) -문화 및 집회시설 중 종교집회장 (타종 및 특성장치 없는 것에 한함) -교육연구 및 복지시설 중 아동관련시설, 노인 복지시설, 사회복지시설 및 근로복지시설 -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중 석유 및 액화가스 판매소 -자동차관련시설 중 주차장, 세차장	· 건축법시행령에 의한 - 단독주택 - 공동주택 (아파트제외) - 제1종근린생활시설 (단, 1층에 한함)	· 축법시행령에 의한 - 단독주택 - 공동주택(아파트 제외) - 제1종근린생활시설 (단, 1층에 한함) - 제2종근린생활시설 · 제과점(제1종근린생활 시설에 해당되지 않은 것) · 서점(제1종근린생활 시설에 해당되지 않은 것) · 사진관, 표구점, 학원 (자동차, 무도학원 제외), 독서실 · 부동산 중개업소 -교육연구시설(제2종근린 생활 시설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) · 도서관 - 노유자시설 · 아동관련시설(영유아 보육시설 · 아동복지 시설 · 유치원)	· 건축법시행령에 의한 -단독주택 -공동주택 (아파트 제외) -제1종근린생활시설 (단, 1층에 한함) - 제2종근린생활시설 · 제과점(제1종근린생활 시설에 해당되지 않은 것) · 서점(제1종근린생활 시설에 해당되지 않은 것) · 사진관, 표구점, 학원 (자동차, 무도학원 제외), 독서실 · 부동산 중개업소 - 교육연구시설(제2종 근린 생활 시설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) · 도서관 - 노유자시설 · 아동관련시설(영유아 보육시설 · 아동복지 시설 · 유치원) - 문화 및 집회시설 · 전시장(박물관 · 미술관 · 기념관, 12m이상 도로에 12m 접함)	· 변경없음
불허용도	· 지정용도, 권장용도 이외의 용도 · 지하층 주거용도 · 제1종근린생활시설 중 건축자재 소매점 · 학교보건법 제5조 규정에 의한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에 해당되는 지역에서 학교보건법 제6조에 해당되는 용도					

주1) 단독주택지(C)의 경우 경사지붕내에 설치하는 다락의 층고를 1.5m초과 1.8m이하로 설치시 건축물의 높이는 다락층을 포함하여 4층이하, 용적률 180% 이하로 완화

- 주2) 대지분할가능선 획지의 공동주차 통로는 미분할시 차량출입불허구간을 피하여 적정 위치 선정 가능
- 주3) 단독주택(다가구주택) 및 공동주택(연립주택 및 다세대주택)은 가구 및 세대당 1대의 주차면수 확보에 한함.
- 주4) 단독주택용지 제1종근린생활시설 1층의 높이는 4미터를 초과할 수 없으며, 지붕의 형태는 경사지붕을 유도하되 다른형태의 지붕은 『인천광역시 서구 건축위원회』 심의를 거쳐 결정
- 주5) 권장용도(C1,C2,C3)는 도로폭원에 따라 완하하고 있으나 도로모퉁이변(도로폭원이 상이한 부분에 접하는 획지)에 대해서는 도로폭원이 큰 것에 접하는 도로변의 용도를 허용

[별표 2]

건축물 형태 분류표(기정)

용도	도면 표시	건축물의 형태
공동주택 용지 (A)	-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· 아파트 1동의 전면길이는 건축물의 높이에 반비례되도록 유도하며, 시각적 개방감 부여 및 심리적 중압감 배제 등을 위해 주동의 최대길이는 80m 이내로 제한</li> <li>※ 주동길이라 함은 수직면에 수평투영한 길이 중 최대길이를 말함. “ㄱ, ㄴ”자 형태의 아파트 주동길이는 가장 거리가 먼 외벽 대각선의 길이를 말함</li> <li>· 아파트의 지붕형태는 경사지붕 설치를 권장(구배는 3/10~7/10이 되도록 함)</li> <li>- 경사지붕이라 함은 건축물 지붕면적의 70%이상을 경사지붕으로 설치한 지붕을 말함</li> <li>- 경사지붕 설치시 옥상의 설비기기 등 경관불량요소는 건축물전면에서 보이지 않도록 설치</li> </ul>
근린생활시설 용지 (B)	-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· 건축물의 외벽은 골조가 노출되어서는 아니되며 의장, 재료, 색채에 있어 3면이상의 벽면에서 통일성을 유지하여야 함</li> <li>· 옥상의 이용</li> <li>- 옥상부분의 옥외창고로의 이용 규제 및 물건을 그대로 방치하지 못하게 함</li> <li>- 부득이 옥상을 야적장으로 사용해야 할 경우에는 지상에서 보이지 않게 하고, 주변 고층 건물에서 보이지 않도록 간이지붕 설치</li> <li>· 지하층으로 통하는 출입구와 계단은 건물내부에 설치하도록 권장</li> <li>· 근린생활시설의 1층 셔터는 벽면의 50% 이상을 투시형으로 설치</li> <li>· 벽식 피로티 설치 기준안(신설)              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피로티 지상층 바닥은 도로면으로 부터 ±15cm 이내로 설치</li> <li>- 피로티 기둥의 폭은 1m 이내로 할 것</li> </ul> </li> </ul>
단독주택 용지 (C)	-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· 지붕의 형태는 경사지붕 설치를 유도</li> <li>- 경사지붕이라함은 건축물 지붕면적의 70% 이상을 경사지붕으로 설치한 지붕을 말함</li> <li>· 경사지붕의 설치시의 구배는 3/10~7/10이 되도록 함</li> <li>- 경사각을 갖는 외벽의 일부나 지붕의 방향은 주위건물과 일치시킴</li> <li>· 옥상의 이용</li> <li>- 옥상부분의 옥외창고로의 이용 규제 및 물건을 그대로 방치하지 못하게 함</li> <li>- 부득이 옥상을 야적장으로 사용해야 할 경우에는 지상에서 보이지 않게 하고, 주변 고층 건물에서 보이지 않도록 간이지붕 설치</li> <li>· 건축물의 외벽은 블록별로 유사한 재료 사용(외벽색상은 원색사용을 지양하여 우리동네라는 분위기 창출을 위한 공간형성)</li> <li>· 건축물의 외벽은 골조가 노출되어서는 아니되며 의장, 재료, 색채에 있어 3면 이상의 벽면에서 통일성을 유지하여야 함</li> <li>· 단독주택, 다세대주택, 연립주택은 지하층의 주거용도 이용을 금지토록하여 쾌적한 주거환경 유도</li> <li>· 벽식 피로티 설치 기준안(신설)              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피로티 지상층 바닥은 도로면으로 부터 ±15cm 이내로 설치</li> <li>- 피로티 기둥의 폭은 1m 이내로 할 것</li> </ul> </li> </ul>

[별표 2]

건축물 형태 분류표(변경)

용도	도면 표시	건축물의 형태
공동주택용지(A)	-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· 아파트 1동의 전면길이는 건축물의 높이에 반비례되도록 유도하며, 시각적 개방감 부여 및 심리적 중압감 배제 등을 위해 주동의 최대길이는 80m 이내로 제한          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※ 주동길이라 함은 수직면에 수평투영한 길이 중 최대길이를 말함. “ㄱ, ㄴ”자 형태의 아파트 주동길이는 가장 거리가 먼 외벽 대각선의 길이를 말함</li> </ul> </li> <li>· 아파트의 지붕형태는 경사지붕 설치를 권장(구배는 3/10~7/10이 되도록 함)          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경사지붕이라 함은 건축물 지붕면적의 70%이상을 경사지붕으로 설치한 지붕을 말함</li> <li>- 경사지붕 설치시 옥상의 설비기기 등 경관불량요소는 건축물전면에서 보이지 않도록 설치</li> </ul> </li> </ul>
근린생활시설용지(B)	-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· 건축물의 외벽은 골조가 노출되어서는 아니되며 의장, 재료, 색채에 있어 3면이상의 벽면에서 통일성을 유지하여야 함</li> <li>· 옥상의 이용          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옥상부분의 옥외창고로의 이용 규제 및 물건을 그대로 방치하지 못하게 함</li> <li>- 부득이 옥상을 아적장으로 사용해야 할 경우에는 지상에서 보이지 않게 하고, 주변 고층 건물에서 보이지 않도록 간이지붕 설치</li> </ul> </li> <li>· 지하층으로 통하는 출입구와 계단은 건물내부에 설치하도록 권장</li> <li>· 근린생활시설의 1층 서터는 벽면의 50% 이상을 투시형으로 설치</li> <li>· 벽식 피로티 설치 기준안(신설)          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피로티 지상층 바닥은 도로면으로 부터 ±15cm 이내로 설치</li> <li>- 피로티 기둥의 폭은 1m 이내로 할 것</li> </ul> </li> <li>· 검암지구 쾌적한 주거환경을 위해 건축물 제한          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가설건축물(단, 공사용 가설건축물은 제외)</li> <li>- 가로경관을 저해하지 않도록 건축물의 구조는 조림식 경량판넬, 샌드위치판넬, 무피복철근구조, 컨테이너 구조물을 제한함.</li> </ul> </li> </ul>
단독주택용지(C1,C2,C3)	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· 지붕의 형태는 경사지붕 설치를 유도 (단, 다른형태의 지붕은 『인천광역시 서구 건축위원회』 심의를 거쳐 결정할 수 있다.)          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경사지붕이라함은 건축물 지붕면적의 70% 이상을 경사지붕으로 설치한 지붕을 말함</li> </ul> </li> <li>· 경사지붕의 설치시의 구배는 3/10~7/10이 되도록 함          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경사각을 갖는 외벽의 일부나 지붕의 방향은 주위건물과 일치시킴</li> </ul> </li> <li>· 옥상의 이용          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옥상부분의 옥외창고로의 이용 규제 및 물건을 그대로 방치하지 못하게 함</li> <li>- 부득이 옥상을 아적장으로 사용해야 할 경우에는 지상에서 보이지 않게 하고, 주변 고층 건물에서 보이지 않도록 간이지붕 설치</li> </ul> </li> <li>· 건축물의 외벽은 블록별로 유사한 재료 사용(외벽색상은 원색사용을 지양하여 우리동네라는 분위기 창출을 위한 공간형성)</li> <li>· 건축물의 외벽은 골조가 노출되어서는 아니되며 의장, 재료, 색채에 있어 3면 이상의 벽면에서 통일성을 유지하여야 함</li> <li>· 단독주택, 다세대주택, 연립주택은 지하층의 주거용도 이용을 금지토록하여 쾌적한 주거환경 유도</li> <li>· 벽식 피로티 설치 기준안(신설)          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피로티 지상층 바닥은 도로면으로 부터 ±15cm 이내로 설치</li> <li>- 피로티 기둥의 폭은 1m 이내로 할 것</li> </ul> </li> <li>· 단독주택용지 제1종근린생활시설 1층의 높이는 4.0m로 제한</li> <li>· 검암지구 쾌적한 주거환경을 위해 건축물 제한          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가설건축물(단, 공사용 가설건축물은 제외)</li> <li>- 가로경관을 저해하지 않도록 건축물의 구조는 조림식 경량판넬, 샌드위치판넬, 무피복철근구조, 컨테이너 구조물을 제한함.</li> </ul> </li> </ul>

[별표 3]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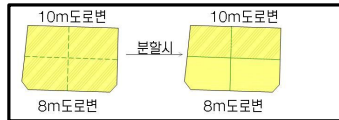
건축물 배치 분류표 (기정)

용도	도면 표시	건축물의 배치
공동주택용지 (A)	-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· 아파트의 전면길이는 일조 및 조망을 고려하여 조정배치하고, 변화있는 층수배치로 경관 및 식별성이 제고되도록 함</li> <li>· 주민의 프라이버시 침해나 밀폐감을 주지않는 범위내에서 주된 건물의 향과 직각 또는 변화 있는 방향이 되도록 유도</li> <li>· 종로 2-169호선변에 접한 필지에 대하여 건축한계선 2m를 지정  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건축한계선에 의해 확보되는 전면공지는 일반인의 접근이 용이하도록 보도의 높이와 같게 조성하고 주차장, 담장, 환기구, 쓰레기적치장 등 보행에 지장을 주는 장애물을 설치하여서는 안되며 바닥포장은 인접도로의 포장, 재료, 형태, 색채와 조화되도록 함</li> </ul> </li> <li>· 담장 설치 : 도로에 면한 단지 경계부에 단지의 관리와 안전을 위해 담장 설치  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도로에 면한 담장 : 투시형이나 생울타리 담장(높이 1.2m 이하) 설치를 권장</li> <li>- 공원 및 녹지시설에 면한 담장 : 생울타리담장(높이 1m이하) 설치</li> <li>- 동일 블록내 담장은 유사한 색감과 재료사용, 통일화된 형태로 블록별 일체감 부여</li> </ul> </li> <li>· 담장설치불허구간 :  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보행으로 연결되는 교차지점(담장을 없애고 같은 동네로서의 공간형성)</li> <li>- 건축한계선 지정 구역(담장 설치를 불허하여 일반인의 활용 유도)</li> </ul> </li> <li>· 같은 단지내에 있는 모든 공동주택단지의 외곽도로에 면한 담장은 재료와 형태를 가급적 한 가지로 통일토록 권장</li> </ul>
근린생활용지 (B)	-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· 위계가 높은 도로에 면하여 건축물 전면을 향하도록 함</li> <li>· 종로 2-169호선, 종로 2-171호선, 종로 2-172호선, 종로 3-145호선변에 접한 필지에 대하여 건축한계선 2m를 지정  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건축한계선에 의해 확보되는 전면공지는 일반인의 접근이 용이하도록 보도의 높이와 같게 조성하고 주차장, 담장, 환기구, 쓰레기적치장 등 보행에 지장을 주는 장애물을 설치하여서는 안되며 바닥포장은 인접도로의 포장, 재료, 형태, 색채와 조화되도록 함</li> </ul> </li> <li>· 담장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높이 0.6m이하의 식수대, 높이 1.0m이하의 투시형담장 또는 생울타리담장으로 설치  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간선가로변 도로에 접한 건축물은 이들 도로에 면한 1층에 셔터를 설치할 경우 투시형 셔터를 사용하여야 함. 다만, 건축물의 용도상 부득이하다고 건축허가권자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</li> </ul> </li> <li>· 건축물은 코아부분의 벽면 또는 개구부가 없는 벽면을 가로에 노출하여서는 안됨  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단, 벽면에 조경, 벽화등 장식처리를 하여 도시미관에 기여하는 경우는 예외로 함</li> </ul> </li> </ul>
단독주택용지 (C)	-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· 종로이상 도로변에 접한 획지에 대하여 건축한계선2m 지정  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건축한계선에 의해 확보되는 전면공지는 일반인의 접근이 용이하도록 보도의 높이와 같게 조성하고 주차장, 담장, 환기구, 쓰레기적치장 등 보행에 지장을 주는장애물을 설치하여서는 안되며 바닥포장은 인접도로의 포장, 재료, 형태, 색채와 조화되도록 함</li> </ul> </li> <li>· 담장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높이 1.2m이하의 투시형담장 또는 1m이하의 생울타리담장으로 설치</li> <li>· 폭 12m이상의 가로에 면한 건축물은 코아부분의 벽면 또는 개구부가 없는 벽면을 가로에 노출하여서는 안됨  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단, 벽면에 조경, 벽화등 장식처리를 하여 도시미관에 기여하는 경우에는 허가권자의 결정에 따르도록 함</li> </ul> </li> </ul>

[별표 3]

건축물 배치 분류표 (변경)

용도	도면 표시	건축물의 배치
공동주택 (A)	-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· 아파트의 전면길이는 일조 및 조망을 고려하여 조정배치하고, 변화있는 층수배치로 경관 및 식별성이 제고되도록 함</li> <li>· 주민의 프라이버시 침해나 밀폐감을 주지않는 범위내에서 주민 건물의 향과 직각 또는 변화있는 방향이 되도록 유도</li> <li>· 종로 2-169호선변에 접한 필지에 대하여 건축한계선 2m를 지정              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건축한계선에 의해 확보되는 전면공지는 일반인의 접근이 용이하도록 보도의 높이를 낮추고 주차장, 담장, 환기구, 쓰레기처리장 등 보행에 지장을 주는 장애물을 설치하여서는 안되며 바닥포장은 인접도로의 포장, 재료, 형태, 색채와 조화되도록 함</li> </ul> </li> <li>· 담장 설치 : 도로에 면한 단지 경계부에 단지의 관리와 안전을 위해 담장 설치              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도로에 면한 담장 : 투시형이나 생울타리 담장(높이 1.2m 이하) 설치를 권장</li> <li>- 공원 및 녹지시설에 면한 담장 : 생울타리담장(높이 1m이하) 설치</li> <li>- 동일 블록내 담장은 유사한 색상과 재료사용, 통일화된 형태로 블록별 일체감 부여</li> </ul> </li> <li>· 담장설치불허구간 :              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보행으로 연결되는 교차지점(담장을 없애고 같은 동네로서의 공간형성)</li> <li>- 건축한계선 지정 구역(담장 설치를 불허하여 일반인의 활용 유도)</li> </ul> </li> <li>· 같은 단지내에 있는 모든 공동주택단지의 외곽도로에 면한 담장은 재료와 형태를 가급적 한가지로 통일토록 권장</li> </ul>
근린생활시설 (B)	-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· 위계가 높은 도로에 면하여 건축물 전면을 향하도록 함</li> <li>· 종로 2-169호선, 종로 2-171호선, 종로 2-172호선, 종로 3-145호선변에 접한 필지에 대하여 건축한계선 2m를 지정              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건축한계선에 의해 확보되는 전면공지는 일반인의 접근이 용이하도록 보도의 높이를 낮추고 주차장, 담장, 환기구, 쓰레기처리장 등 보행에 지장을 주는 장애물을 설치하여서는 안되며 바닥포장은 인접도로의 포장, 재료, 형태, 색채와 조화되도록 함</li> </ul> </li> <li>· 담장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높이 0.6m이하의 식수대, 높이 1.0m이하의 투시형담장 또는 생울타리담장으로 설치              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간선가로변 도로에 접한 건축물은 이들 도로에 면한 1층에 서터를 설치할 경우 투시형 서터를 사용하여야 함. 다만, 건축물의 용도상 부득이하다고 건축허가권자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</li> </ul> </li> <li>· 건축물은 코아부분의 벽면 또는 개구부가 없는 벽면을 가로에 노출하여서는 안됨              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단, 벽면에 조경, 벽화등 장식처리를 하여 도시미관에 기여하는 경우는 예외로 함</li> </ul> </li> </ul>
단독주택 (C1, C2, C3)	-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· 종로이상 도로변에 접한 획지에 대하여 건축한계선2m 지정              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건축한계선에 의해 확보되는 전면공지는 일반인의 접근이 용이하도록 보도의 높이를 낮추고 주차장, 담장, 환기구, 쓰레기처리장 등 보행에 지장을 주는 장애물을 설치하여서는 안되며 바닥포장은 인접도로의 포장, 재료, 형태, 색채와 조화되도록 함</li> </ul> </li> <li>· 담장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높이 1.2m이하의 투시형담장 또는 1m이하의 생울타리담장으로 설치</li> <li>· 폭 12m이상의 가로에 면한 건축물은 코아부분의 벽면 또는 개구부가 없는 벽면을 가로에 노출하여서는 안됨              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단, 벽면에 조경, 벽화등 장식처리를 하여 도시미관에 기여하는 경우에는 허가권자의 결정에 따르도록 함</li> </ul> </li> <li>· 획지분할에 관한 사항              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전면이 8m 도로에 접할 때 건축물용도 제한 C1적용</li> <li>- 전면이 10m도로에 접할 때 건축물용도 제한 C2적용</li> <li>- 전면이 12m도로에 접할 때 건축물용도 제한 C3적용</li> </ul> </li> <li>· 권장용도에 관한 사항              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도로 모퉁이변(도로폭원이 상이한 부분)에 접한 획지에 대한 기준은 도로폭원이 큰 것에 접하는 도로변의 용도를 허용</li> </ul> </li> </ul>



**[별표 4]**

**건축물의 색채 분류표 (변경없음)**

용도	도면 표시	건축물의 색채
공동주택용지 (A)	-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· 검암2구역 북측 및 서측은 Landmark 기능 및 단지내 쾌적한 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밝고 명랑한 색조계열 사용</li> <li>· 인천시의 시색인 청색을 자연경관과의 조화를 고려하여 채도 및 명도를 낮추어 주조색으로 사용토록 권장</li> <li>· 주변은 안정된 주거환경 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침착한 색조계열 사용</li> </ul>
근생활시설용지 (B)	-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· 주활동축으로서 밝고 명랑한 색조계열을 사용하며 원색의 사용을 금함(단, 강조색은 가능)</li> <li>· 건축물의 전면색채는 동일용도의 인접건축물과는 동일계통의 색채를 사용하여 식별성 강화</li> </ul>
단독주택용지 (C)	-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· 원색의 사용을 금하며(강조색은 가능) 저채도 색채를 사용</li> <li>· 건축물의 좌우배면은 전면색채와 동일계통의 색채를 사용</li> <li>· 검정색 계통의 벽돌사용을 지양하여 밝고 명랑한 분위기의 도시경관 형성</li> </ul>

■ 색채계획목표

- 색채계획은 도시경관에 영향을 주는 주요요소로서 주민들에게 심미감과 쾌적한 도시환경을 느끼도록 하는 요소임
  - 주변지역과 조화를 이루는 도시경관의 형성을 위한 색채 사용
  - 인천시를 상징할 수 있는 색채감의 조성
  - 구역내의 변화로운 색채 형성으로 식별성 및 미관의 개선
  - 대상주민 뿐만아니라 도로를 통해 보여지는 가로경관의 시각효과 개선

■ 색채의 분류

- 자율적인 색채계획을 최대한 보장하되 색채사용의 범위를 명시하여 색채적용의 융통성을 부여토록 함
- 색채의 분류는 주조색, 보조색, 강조색 등 3가지로 분류하며, 이들 색채의 적절한 사용을 통하여 다양하면서도 통일감 있는 도시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함
  - 주조색 : 대상지내 건축물의 도로변에 접하는 가장 잘보이는 면에 배색되어 시각적 인상을 결정하는 색으로서 외벽면적의 70%이상을 차지
  - 보조색 : 주조색보다는 좁은 면적에 배색되어 주조색과 조화를 이루면서 전체적으로 조화를 이루어 전체적인 변화를 주는 색으로서 외벽면적의 10~30%를 차지
  - 강조색 : 건축물의 선이나 점같이 매우 좁은 면의 특히 강조할 곳에 배색되어 주조색이나 보조색과 강한 대비를 이루면서 전체에 활력을 주고 변화를 주는 색이며 외벽면적의 10%미만을 차지

[별표 5]

차량동선.주차시설.단지내시설물에 관한 계획 (기정)

기 타 사 항

■ 차량동선 및 주차에 관한 계획

◦ 차량동선에 관한 계획

- 간선 및 집산도로에서의 차량진출입을 가능한 배제하여 원활한 교통흐름 유도

① 차량출입불허구간

- 중로 2-169호선변의 주차통로를 제외한 구간
- 공동주택(아파트) 용지는 교차로 측단으로 부터 30m이내의 구간
- 근린생활시설용지는 교차로 측단으로 부터 10m이내 구간
- 버스정류장, 횡단보도, 육교 등에서 10m 이내 구간

② 주차통로

- 간선도로 및 집산도로에서의 진출입을 가능한 억제하되 불가피할 경우 획지1개소당 1개소의 주차통로 설치를 유도하며 1개소당 통로폭은 최소3m이상 확보 (단, 획지의 분할 및 합병시 차량출입 불허구간을 피하여 적정위치선정)

◦ 주차에 관한 계획

- 공동주차장 설치 및 공동진출입 유도
- 법정규모 이상의 주차장을 확보하고, 주거용 건축물은 세대당 1대이상의 주차면수확보 유도
- 근린생활 용지내 다가구주택은 1가구당, 연립주택 및 다세대주택은 1세대당 1대의 주차 면수 권장

■ 단지내 시설물 배치계획

◦ 기본방향

- 보행활동중 시설물을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어야 하며 사용중 위험 발생의 가능성을 최소화
- 가로시설물의 형태, 크기, 배치, 구조 및 재료는 주위환경과 어울리도록 설치
- 보행인이나 교통흐름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도록 계획하고, 특히 지체부자유자를 위한 편의시설 설치
- 대중 인식도가 높은 옥외시설물 또는 안내판 등의 시설물은 지역적 특성을 살린 디자인을 도입하여 설치

[별표 5]

차량동선.주차시설.단지내시설물에 관한 계획 (변경)

기 타 사 항

■ 차량동선 및 주차에 관한 계획

◦ 차량동선에 관한 계획

- 간선 및 집산도로에서의 차량진출입을 가능한 배제하여 원활한 교통흐름 유도

① 차량출입불허구간

- 중로 2-169호선변의 주차통로를 제외한 구간
- 공동주택(아파트) 용지는 교차로 측단으로 부터 30m이내의 구간
- 근린생활시설용지는 교차로 측단으로 부터 10m이내 구간
- 버스정류장, 횡단보도, 육교 등에서 10m 이내 구간

② 주차통로

- 간선도로 및 집산도로에서의 진출입을 가능한 억제하되 불가피할 경우 획지1개소당 1개소의 주차통로 설치를 유도하며 1개소당 통로폭은 최소3m이상 확보 (단, 획지의 분할 및 합병시 차량출입 불허구간을 피하여 적정위치선정)

◦ 주차에 관한 계획

- 공동주차장 설치 및 공동진출입 유도
- 법정규모 이상의 주차장을 확보하고, 주거용 건축물은 세대당 1대이상의 주차면수 확보 유도
- 근린생활 용지내 다가구주택은 1가구당, 연립주택 및 다세대주택은 1세대당 1대의 주차면수 권장

■ 단지내 시설물 배치계획

◦ 기본방향

- 보행활동중 시설물을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어야 하며 사용중 위험 발생의 가능성을 최소화
- 가로시설물의 형태, 크기, 배치, 구조 및 재료는 주위환경과 어울리도록 설치
- 보행인이나 교통흐름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도록 계획하고, 특히 지체부자유자를 위한 편의시설 설치
- 대중 인식이 높은 옥외시설물 또는 안내판 등의 시설물은 지역적 특성을 살린 디자인을 도입하여 설치

[별표 6]

도시계획도로에 관한 계획 (변경없음)

용도	도면 표시	도시계획도로	
도시 계획 도로	-	가로시설물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· 꼭 필요한 곳에만 적절한 수량으로 설치토록 유도</li> <li>· 상호보완적 가로시설물을 집합시켜 복합적 기능을 갖도록 설치</li> <li>· 시설간에 통일성 있고 시각적으로 아름답게 하여 가로를 장식할 수 있도록 설치</li> </ul>
		식재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· 지역 특성 및 계절적인 특징을 나타내는 수종을 선택하여 지역별, 가로망별로 특징적 경관을 연출하도록 식재</li> <li>· 인천시의 시목인 목백합 또는 서구의 구목인 은행나무 등의 식재 유도</li> <li>· 가로수는 차도로부터 0.5m, 건물외벽으로부터 2~3m 이상 떨어져 식재하며, 식재간격은 6~8m를 기준으로 함</li> </ul>
		포장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◦ 간선도로 및 이면도로</li> <li>· 변화가 적고 보수가 용이하며 차량의 하중에 견딜 수 있는 내구성 재료의 사용</li> <li>· 재료는 아스팔트 및 유색아스팔트 사용</li> <li>◦ 보도</li> <li>· 보행의 지루함을 해소할 수 있는 다양한 패턴</li> <li>· 포장구획을 소단위로하여 친근감 유지</li> <li>· 재료는 소형고압블럭 및 일반콘크리트블럭 등의 재료 사용 유도</li> <li>◦ 연석</li> <li>· 횡단로 등에서는 경사면으로 처리</li> <li>· 재료는 화강석(인조화강석)등 차량에 의해 파손되지 않는 재료 사용</li> </ul>
		조명시설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◦ 가로등</li> <li>· 도로의 교통량, 도로폭, 바닥포장의 재질, 건축물의 재질(반사정도) 등을 고려하여 높이, 위치, 밝기 등을 조절</li> <li>· 조명등의 설치타입은 주변여건에 적합되도록 선택</li> <li>◦ 보행등</li> <li>· 연속적으로 일정한 조도를 유지하도록 하며, 가급적 보도폭 전체로 빛이 달도록 계획</li> </ul>
		기타사항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· 육교, 계단, 경사로의 설치 및 조명시설, 옥외가로시설물 등 본 계획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관련법의 기준을 준용토록 함(장애인·노인·임산부 등의 편의 증진보장에 관한 법률, 도로구조령의 도로조명 시설기준, 옥외광고물 관리법, 인천시 C·I·P 기준 등)</li> </ul>

**[별표 7]**

**옥외광고물 설치기준 (변경없음)**

- 옥외가로시설물의 형태 및 색채 등 본 계획에서 정하지 않은 부분에 대하여는 인천시 도시개성창조사업(C.I.P) 운용관리지침의 기준을 준용토록 함
- 가로시설물, 안내판, 옥외광고물, 표지판 등의 도시개성과 관련한 일체화된 디자인 계획

**[별표 8]**

**기타사항 (변경없음)**

- 환경영향평가, 교통영향평가, 에너지사용계획 등 과업추진 과정에서 협의 완료, 승인된 내용 중 본 계획과 관련된 사항은 수용하여야 하며, 본 계획에 별도로 언급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기존의 법규나 인천광역시 조례 및 서구 관련조례를 준용함
- 본 지구단위계획의 일부 규제내용이 기존의 법, 시행령, 시행규칙 등 관련법령의 내용과 서로 다를 경우에는 이들 중 그 규제내용이 강화된 것을 준용함

## 인천광역시서구고시 제2008 - 18호

## 인천도시계획시설(도로:백석지구 소3-1호선일원) 실시계획(변경)인가 고시

인천도시계획시설 【도로명:백석지구 소3-1호선일원, 사업명:백석지구 소3-1호선일원 도로개설공사】 사업을 시행하고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, 제91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0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실시계획(변경)인가를 고시합니다.

관계도서는 인천광역시 서구청 도시개발과(560-4766)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보여드립니다.

2008. 5. 18.

### 인천광역시서구청장

1. 변경사유 : 법면분할로 인한 편입용지 변경
2. 사업시행지(변경없음) : 인천광역시 서구 백석동 22-10번지 일원
3. 사업의 종류 및 명칭(변경없음)
  - 【종류】 도시계획도로(소로3류1호선 및 소로3류4호선)
  - 【명칭】 백석지구 소3-1호선일원 도로개설공사
4. 사업의 규모(변경없음) : L = 220m, B = 6m 및 L = 90m, B = 4m
5.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(변경없음)
  - 【성명】 인천광역시 서구청장
  - 【주소】 인천광역시 서구 심곡동 244번지
6. 사업의 착수 및 준공예정일(변경없음) : 2007. 6월 ~ 2008. 12. 31
7.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및 지장물의 소재지, 지번, 지목 및 소유권 이외의 권리명세(변경) : 붙임과 같음
8. 토지 또는 건물의 소유자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규정에 의한 관계인의 주소, 성명(변경) : 붙임과 같음
9.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9조 규정에 의한 공공시설 등의 귀속 및 양도에 관한 사항(변경) : 붙임과 같음

[별첨]

용 지 조 서

일련 번호	소재지 구분	소재지 지번	지적면적 (㎡)	평면면적(㎡)		면적 잔여	소유자			관계인			비고
				도로내	도로외		성명	주소	성명	주소	성명	주소	
1	백석동 변경없음	22-9	대 578	1	0	577	당해지구사가지 조정사업조합	인천 서구 당하동 874-1					금차시공 제외
2	백석동 변경없음	22-10	구 137	69	68		항강농지 개량조합	김포군 김포읍 사우리 288					금차시공 제외
3	백석동 당초	22-11	대 105	13	0	92	당해지구사가지 조정사업조합	인천 서구 당하동 874-1	외환신용카드주식회사	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	가압류		금차시공 제외
							김영호	서울 양천구 신정동 330 목동신시가지아 파트 1413동 502호	한국자산관리공사	서울지방법원	가압류		
							당해지구사가지 조정사업조합	인천 서구 당하동 874-1	외환신용카드주식회사	서울 서초구 방배동 935-34	가압류		
							당해지구사가지 조정사업조합	인천 서구 당하동 874-1	주식회사한국주택은행	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36-3	가압류		
3	백석동 변경	22-11	대 105	13	0	92	김영호	서울 양천구 신정동 330 목동신시가지아 파트 1413동 502호	광남세무서		압류		
									서울특별시		압류		
									한국자산관리공사	서울 강남구 역삼동 814	가압류		
4	백석동 변경	22-22	구 5	5	5	0	항강농지 개량조합	김포군 김포읍 사우리 288	서울특별시 양천구		압류		범면 추가
5	백석동 변경없음	22-13	구 75	75	0	0	항강농지 개량조합	김포군 김포읍 사우리 288					
6	백석동 변경	14-11	구 3	3	3	0	항강농지 개량조합	김포군 김포읍 사우리 288					범면 추가
7	백석동 변경	22-12	구 11	0	11	0	항강농지 개량조합	김포군 김포읍 사우리 288					범면 추가

일련 번호	소재지	구분	소재지 지번	지적면적 (㎡)	편입면적(㎡)			소유자			관계인			비고
					도로내	도로외	잔여	성명	주소	성명	주소	성명	주소	
8	백석동 변경없음	변경없음	22-14 대	15	0	0	0	박영혜	서울 양천구 신정동 282번지 27호 라이 프하이츠 빌라 기동 102호					
								김영근	인천광역시 서구 백석동 21번지1호					
								배진호	부산 서구 동대신동2가 313번지 삼익아 파트 6동 406호					
9	백석동 변경	변경	22-23 대	74	0	74	0	박영혜	서울 양천구 신정동 282번지 27호 라이 프하이츠 빌라 기동 102호					범면 추가
								김영근	인천광역시 서구 백석동 21번지1호					
10	백석동	변경	14-10 광	126		126	0	한강농지 개발조합	김포군 김포읍 사우리 288					범면 추가
11	백석동	변경없음	14-6 광	98		98	0	한강농지 개발조합	김포군 김포읍 사우리 288					
12	백석동	변경없음	19-7 마	188		188	0	김무용	인천 서구 백석동 22-5					
13	백석동	변경	19-11 마	214		214	0	김무용	인천광역시 서구 백석동 22-5					범면추가
14	백석동	양조	14-7 구	802	679	0	123	한강농지 개발조합	김포군 김포읍 사우리 288					
14	백석동	변경	14-7 구	802	802	0	0	한강농지 개발조합	김포군 김포읍 사우리 288					편입면적 변경
15	백석동	변경	14-9 구	43	0	43	0	한강농지 개발조합	김포군 김포읍 사우리 288					범면추가
16	백석동	변경	22-25 도	2	0	2	0	인천광역시서구	인천 서구 서곶길 323					범면 추가
17	백석동	양조	22-19 도	10	10	0	0	이훈자	인천광역시 서구 백석동 18					
17	백석동	변경	22-19 도	10	10	0	0	인천광역시서구	인천 서구 서곶길 323					
18	백석동	변경	22-18 대	2	0	2	0	김무용	인천광역시 서구 백석동 22-5					범면추가
19	백석동	변경없음	22-17 대	94	94	0	0	김무용	인천광역시 서구 백석동 22-5					

일련 번호	소재지 구분	소재지 지번	지목	지역면적 (㎡)	편입면적(㎡)		소유자			관계인			비고			
					도로내	도로외	성명	주소	성명	주소	성명	주소		권리관계		
20	백석동	변경	22-24	대	14	0	14	0	김무용	인천광역시 서구 백석동 22-5				범면추가		
21	백석동	변경인입	19-10	담	1	0	0	0	김무용	인천광역시 서구 백석동 22-5						
22	백석동	변경인입	19-9	담	125	0	0	0	김무용	인천광역시 서구 백석동 22-5						
23	백석동	변경인입	22-15	전	9	0	0	0	김무용	인천광역시 서구 백석동 22-5						
24	백석동	변경	22-20	전	6	0	6	0	김무용	인천광역시 서구 백석동 22-5				범면추가		
25	백석동	변경인입	22-16	대	2	2	0	0	김용민	인천 부평구 산곡동 294-35 우성아파트 106-206						
26	백석동	변경	22-21	대	3	0	3	0	김용민	인천 부평구 산곡동 294-35 우성아파트 106-206	기입등록 부친지급	정기도 부평중1동 1131-3 동경필입 1층			범면 추가	
27	백석동	양초	19-3	도	78	78	0	0	허욱	인천광역시 서구 백석동 18-2						
27	백석동	변경	19-3	도	78	78	0	0	인천광역시서구	인천 서구 서공길 823						
28	백석동	변경	14-12	구	82	0	82	0	한강지 개량조합	김포군 김포읍 사우리 288				범면추가 금차시공제외		
29	백석동	변경	19-12	담	169	0	169	0	김용관	인천광역시 서구 백석동 21-1	서인천농업협동조합	인천 서구 가정1동 482-4			범면추가 금차시공제외	
30	백석동	변경인입	19-8	담	401	401	0	0	김용관	인천광역시 서구 백석동 21-1	서인천농업협동조합	인천 서구 가정1동 482-4			금차시공제외	
계																
					양 초	1,858	0	860								
					변 경	2,705	1,981	754	952							

지장물 전체 집계 조서

번호	소재지	구분	지번	물건의 종류	구조 및 규격	수량(㎡,식,주)			실제 이용 상황	소유자			관계인			비고
						계	면적	잔여 면적		성명	주소	성명	주소	성명	주소	
1	백석동	변경없음	22-13	한진주	8627Q 001	1.0										
2	"	변경없음	14-8	"	8627S 092	1.0										
3	"	변경없음	22-5	채신주	C-201 1301-25	1.0										
4	"	변경없음	14-3	"	C-201 1301-25	1.0										
5	"	변경없음	19-7	"	03-9 7-14-20	1.0										
6	"	변경없음	14-7	"	KT 224	1.0										
7	"	변경없음	19-9	"	확인불가	1.0										
8	"	변경없음	19-8	수목	은행나무	3.0										
9	"	당초	22-8	"	이팝나무	48.0										
9	"	변경	22-8	"	이팝나무	48.0				김용관	인천 서구 백석동 21-1					
10	"	당초	22-17	"	연산홍, 자산홍	480.0										
10	"	변경	22-17	"	연산홍, 자산홍	480.0				김무웅	인천 서구 백석동 22-5					
11	"	변경(신규)	19-9외1	수목	감나무	3.0				김무웅	인천 서구 백석동 22-5					

**공 고**

인천광역시 서구 공고 제2008-417호

**도로의 지정공고**

인천 서구 가정동 산6-2번지상의 행위(건축)허가와 관련하여 건축법제2조 제1항 제11호나목 및 동법제45조 규정에 의거 도로로 지정하고 공고 합니다.

위치	지목	토지면적(㎡)	도로지정면적(㎡)	토지소유자	비고
가정동 산6-2	임야	28,476	1,303	최공창	
가정동 산5-2	임야	1,823	117	학교법인 연세대학교	

※ 관계서류(도서)는 서구청 도시개발과 도시관리팀(☎ 560-4763)에 비치합니다.

2008년 5월 13일

**인천광역시서구청장**

인천광역시서구공고 제2008 - 426호

## 공 고

폐기물처리업등 허가 및 승인·신고제한 공고  
(3차 변경)

폐기물관리법제25조,제29조, 제44조 및 건설폐기물의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제21조 규정에 의한 『폐기물처리업』, 『폐기물처리시설 설치』, 『폐기물재활용 신고』, 『건설폐기물처리업』의 허가 및 신고를 제한하고자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.

2008. 5. 16.

**인 천 광 역 시 서 구 청 장**

1. 제한목적

○ 우리구의 지리적 여건과 개발 전망 등을 감안하여 폐기물처리업체의 증가로 인한 환경오염으로 구민생활의 불편과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에 장애가 되고 있어 환경오염 예방과 쾌적한 환경조성을 위하여 폐기물처리업 등에 대한 허가(일부 변경허가 포함) 및 신고(일부 변경신고 포함)를 제한하고자 함.

2. 개정내용

관련법 조항	제한적용범위	
	변경전	변경후
폐기물관리법 제25조⑩항 및 동법 시행규칙제29조①항 2호,4호	폐기물처리업의변경허가 [폐기물수집·운반업] -운반차량(임시차량제외)의 증차	- 삭제
	[폐기물중간처리업] -<신설>	-폐기물처리시설 소재지의 변경[폐기물처리업 허가기관이 우리구가 아닌 다른 기관인 업체가 우리구로 이전 할 경우]
폐기물관리법제29조 ①항 및 ②항	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승인·신고	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승인·신고 다만, <u>신규로 재활용신고업을 하고자 하는 자의 폐기물처리시설설치 승인 및 신고에 한하여 제한</u>
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2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13조①항 4호,6호	건설폐기물처리업의변경허가 [건설폐기물중간처리업] -<신설>	건설폐기물처리업의변경허가 [건설폐기물중간처리업] -건설폐기물처리시설 소재지의 변경 [건설폐기물처리업 허가기관이 우리구가 아닌 다른 기관인 업체가 우리구로 이전 할 경우]
	[건설폐기물수집·운반업] -운반차량의 증차	- 삭제

3. 허가 및 신고 제한 적용범위

관련법 조항	적용범위
폐기물관리법제25조①항내지③항	○폐기물처리업(수집·운반업,중간처리업)의 허가
폐기물관리법제25조⑩항 및 동법시행규칙제29조 ①항 1호,2호,9호	○폐기물처리업의 변경허가 [폐기물수집·운반업] -수집·운반처리대상 폐기물의 변경(증가)  [폐기물중간처리업] -수집·운반·처리대상 폐기물의 변경(증가) -폐기물처리시설 소재지의 변경 [폐기물처리업 허가기관이 우리구가 아닌 다른 기관인 업체가 우리구로 이전할 경우에 한함] -허용보관량의 변경(증가)
폐기물관리법제25조⑩항 및 동법시행규칙제33조①항 3호	○ 폐기물처리업의 변경신고 -연락장소 또는 사무실 소재지의 변경 [폐기물처리업 허가기관이 우리구가 아닌 다른 기관인 업체가 우리구로 이전할 경우에 한함]
폐기물관리법제29조①항 및 ②항	○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승인·신고 [신규로 재활용신고업을 하고자 하는 자의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승인 및 신고에 한함]
폐기물관리법제46조제1항 및 동법시행규칙제67조제3항 1호, 5호, 6호	○ 폐기물재활용 신고 ○ 폐기물재활용 변경신고 -재활용대상 폐기물 -재활용시설의 용량 또는 재활용대상 폐기물의 수집예상량 [50%이상 변경(증가)하는 경우] -폐기물보관시설 및 보관용기의 용량 증가
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②항 내지④항	○ 건설폐기물처리업의 허가
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2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 13조①항 4호,5호,10호	○ 건설폐기물처리업의 변경허가 -건설폐기물처리시설 소재지의 변경 [건설폐기물처리업 허가기관이 우리구가 아닌 다른 기관인 업체가 우리구로 이전할 경우에 한함]  -연락장소 또는 사무실 소재지의 변경 [건설폐기물처리업 허가기관이 우리구가 아닌 다른 기관인 업체가 우리구로 이전할 경우에 한함]  -허용보관량의 변경(증가)

4. 허가 및 신고 제한 기간 : 공고일로부터 ~ 2009.12.31.까지
5. 제한지역 : 서구 전지역
6.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구청 환경보건과(560-4353)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

인천광역시서구공고 제2008 - 427호

## 공 시 송 달 공 고

건축법 제80조 6항 및 국세징수법 제24조 규정에 의거 채납자에 대해 압류예고를 등기우편 송달하였으나 수취인 부재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.

2008. 5. 16.

## 인 천 광 역 시 서 구 청 장

1. 제 목 : 위반건축물에 대한 이행강제금 채납자에 대한 압류예고
2. 공시송달공고대상자 및 내역

위반건축물 내역				건축주(토지주)		비 고 (이행강제금 부과액)
소재 지번	용도	구조	면적 (㎡)	성명	주소	
인천광역시 서구 가좌동 69-17	주방	판넬	8.4	윤정	인천광역시 서구 가좌동 69-17 3층	707,950
	창고	판넬	20			1,685,600
인천광역시 서구 검암동 678-4	창고	파이프/ 천막	12	최창준	인천광역시 서구 연희동 712-10 정진빌라 B동 102호	326,220
	창고	파이프/ 콘테이너	38			2,066,060

3. 근거법규 : 『건축법 제80조 제6항』 및 『국세징수법 제24조』
4. 송달불능사유 : 수취인 부재
5. 공고기간 : 2008. 5. 16 ~ 2008. 5. 31
6. 기타문의 : 서구청 건축과(☎ 032-560-4715)

**인천광역시서구공고 제2008 - 429호**

인천광역시 서구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를 제정함에 있어, 그 제정 사유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알려 미리 의견을 듣고자 인천광역시 서구 법제사무 처리규칙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.

2008년 5월 16일

**인 천 광 역 시 서 구 청 장**

**인천광역시 서구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영  
조례(안) 입법예고**

**1. 제 정 사 유**

- '07.12.21 개정·공포된 『옥외광고물 등 관리법』 제6조의2 신설에 따라 광고물 등의 정비를 통해 아름답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옥외광고정비기금을 설치하고, 그 관리 및 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.

**2. 주 요 내 용**

- 옥외광고정비기금의 재원 및 용도, 운용관리 등에 관한 사항 (안 제2조부터 제4조까지)
- 옥외광고정비기금 운용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기능 등에 관한 사항 (안 제5조부터 제8조까지)
- 옥외광고정비기금 운용계획 및 기금결산 등에 관한사항 (안 제9조부터 제11조까지)

**3. 의 견 제 출**

- 이 조례(안)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8년 6월 5일 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인천광역시서구청장(참조 : 녹지경관과)에게 서면으로 제출하거나 전화(560-4183) 및 FAX(560-4809)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.
  - 가. 예고사항에 대한 찬반의견
  - 나. 성명(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)
  - 다. 기타 참고사항

**4. 인천광역시 서구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(안) : “붙임”**

## 인천광역시 서구 조례 제 호

## 인천광역시 서구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(안)

**제1조 (목적)** 이 조례는 「옥외광고물 등 관리법」(이하 “법”이라 한다)제6조의2에 따라 광고물 등의 정비를 통해 아름답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옥외광고정비기금(이하 “기금”이라 한다)을 설치하고, 그 관리 및 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**제2조 (기금의 재원)** 기금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.

1. 법 제6조제4항에 따른 옥외광고사업 수익금 중 구로 배분되는 수익금
2. 법 제17조에 따른 수수료
3. 법 제20조에 따른 과태료
4. 법 제20조의2에 따른 이행강제금
5. 일반회계 또는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
6. 국가 또는 인천광역시로부터의 보조금
7. 기타 옥외광고물을 이용해 조성한 수익금

**제3조 (기금의 용도)** ① 기금은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사업 또는 활용목적에 사용한다.

1. 광고물 등의 정비
2. 경관개선
3. 옥외광고업자에 대한 교육 및 지원
4. 간판시범거리 조성사업
5. 간판 디자인 및 제작설치 가이드라인 개발사업
6. 그 밖에 구청장이 옥외광고물관리와 관련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

② 기금은 목적 외로 사용할 수 없다.

**제4조 (기금의 운영관리)** ① 기금은 기금운용계획에 의하여 수입·세출예산의 현금구좌로 관리한다.

② 기금은 구 금고나 이자율이 높고 안전한 예금으로 예치, 관리한다.

**제5조 (위원회 설치 및 구성)** ① 기금의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서구 옥외광고정비기금 운용심의회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)를 둔다.

-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2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
- ③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도시관리국장이 된다.
- ④ 위원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.
  1. 기획홍보실장, 녹지경관과장
  2. 옥외광고와 관련 있는 구소속 5급이상 공무원
  3. 옥외광고관련 분야에 종사하는 자로서 당해 분야를 대표하거나 기금의 조성·관리·운용에 전문지식이 있는 자
- ⑤ 제4항제1호에 의하여 임명된 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, 제4항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, 연임할 수 있다.

**제6조 (위원회 기능)** ① 위원회는 옥외광고정비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.

1. 기금운용계획·변경안
  2. 기금결산보고서안
  3. 기타 기금의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으로 구청장이 부의하는 사항
- ②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, 그 의장이 된다.
-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**제7조 (위원장의 직무)**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의를 통할한다.

-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.

**제8조 (간사 및 수당 등)** ① 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둔다.

- ②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며 경관관리담당이 된다.
- ③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「인천광역시서구위원회실비변상조례」에 의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.

**제9조 (기금운용 계획)** ① 구청장은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.

-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.
1.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
  2. 당해연도 사업계획 및 자금계획에 관한 사항
  3. 기금계산에 관한 사항

4. 기타 기금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

③ 제1항에 의하여 수립된 기금운용계획안은 회계연도 개시 40일전까지 구의회에 제출하여 심의·의결을 받아야 한다.

**제10조 (회계 공무원)** ① 구청장은 기금의 효율적 운용·관리를 위하여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둔다.

1. 기금운용관 : 도시관리국장

2. 기금출납원 : 경관관리담당

②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기금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해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.

**제11조 (기금결산)** ① 구청장은 출납 폐쇄 후 80일이내에 기금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.

② 제1항에 의한 기금결산보고서에 첨부하여야 할 서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.

1. 기금결산의 개황 및 분석에 관한 서류

2.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 등 재무제표

3. 현금 및 지출계산서 등 현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백히 하는 서류

③ 제1항에 의하여 작성된 기금결산보고서는 다음 회계연도 개시 80일 전까지 구의회에 제출하여 심의·의결을 받아야 한다.

**제12조 (관계규정의 준용 등)** ① 기금의 관리에 관하여는 현금의 수입·지출의 절차 및 출납·보관, 공유재산이나 물품의 관리·처분 또는 채권관리의 예에 의한다.

② 제1항의 규정 이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「인천광역시 서구 재무회계규칙」을 준용한다.

**제13조 (시행규칙)**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

**부 칙**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